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무역정책관, 투자정책관,
통상국내대책관실)

2016. 12.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무역정책관 · 투자정책관 · 통상국 내대행관실

2016.12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1. 무역정책관 1

<일반회계>

- (1)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4
- (2)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12
- (3)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20
- (4) 대한상사중재원지원 30
-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7
- (6) 중소기업수출경쟁력강화 45
- (7) 수출지원기반활용 51
- (8) 무역보험기금출연 56
- (9) 생활산업경쟁력강화 64

2. 투자정책관 73

<일반회계>

- (1) 해외진출기반구축사업 76

<지특회계>

- (2)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 81

3. 통상국내대책관실 91

<일반회계>

- (1)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94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관

(백만원, %)

사업명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	6,794	5,398	5,025	△ 373	△6.9
○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4,785	5,258	5,248	△ 10	△0.2
○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2,936	2,696	2,696	0	0
○ 대한상사증재원지원	1,100	971	840	△ 131	△ 13.5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20,451	234,394	216,682	△17,712	△7.6%
○ 중소기업수출경쟁력강화	54,287	52,629	23,500	△ 1,665	△3.1%
○ 수출지원기반활용	0	0	63,815	63,815	순증
○ 무역보험기금출연	145,000	30,000	0	△30,000	△100.0
○ 생활산업경쟁력강화	4,840	4,873	4,895	22	0.5
소계	440,193	336,219	322,701	△13,518	△4.0
총계	440,193	336,219	322,701	△13,518	△4.0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6,794	5,398	5,025	△373	△6.9

* 사업코드 : 094 - 110 - 0 - 110 - 113 - 1110 - 1311

* 담당자 : 무역정책관(박진규), 무역진흥과장(박덕열, 044-203-4030), 사무관(안창형, 403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0~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전시산업진흥회

2. 사업목적

- 국제 비즈니스와 교류의 장소로서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 육성
- 국내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 3,000백만원

-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가 찾아오는 국제수준의 전시회 육성
- 산출근거 : 3,000백만원 = 39건 × 77백만원

* 국제무역전시회(기존 Global Top 전시회), 유망전시회, 신규무역전시회(신설) 차등지원

② 전시산업 기반구축 : 2,025백만원

- 국내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 산출근거 : 2,025백만원
 -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 1,210백만원
 - 전시회 평가관리 : 815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전시회는 WTO 체제하에서도 지원이 가능하여 각국 정부는 자국의 수출증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전시회에 대한 지원확대 강화 추세
- 무역전시회는 유력 바이어와 수출상담이 가능한 국제 비즈니스의 장(場)을 제공하여 수출마케팅에 가장 효율적
 - * 독일 총 무역거래의 60~70%가 전시회를 통해 성사
 - * 국내 전시회의 경우 국고지원 1억원당 연평균 약 80백만불의 수출창출효과
- 전시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관광수지 개선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
 - * '13년 KINTEX 방문객 소비규모는 4,525억원(고양시 1년 예산규모(약 1.4조원)의 약 32% 크기), 서울모터쇼 방문객 소비규모 202억원으로 추정(신한카드)
 - * 전시산업은 매출 10억원당 18.5명의 고용유발효과('07년)
 - * MICE관련 해외참가자 1인당 지출액(\$2,585)은 일반 관광객(\$1,409)의 2배수준(한국관광공사)
 - * 해외바이어 1명 유치는 21인치 컬러TV 24대, 3명 유치는 1500cc 승용차 1대 수출과 동일한 효과(한국관광공사)
- 강력한 통합마케팅 수단으로서 기업경쟁력 강화
 - * 미 전시산업 연구단체인 CEIR의 전시회의 마케팅효과 분석결과 전시회 참가기업의 자사제품 마케팅 성과는 비참여기업의 50%의 시간, 비용, 노력으로 동일한 성과를 얻음
 - * 미국기업의 91%가 전시회를 최고의 구매 정보원천으로 지목
 - * 전시회의 시각적 효과는 14주간 지속되어 잡지광고가 1주일 및 개별 홍보, 광고의 2.3주에 비교하여 6배의 구매효과가 있다고 분석
 - * 전시회의 마케팅 효용성
 - 소비자 : 구매결정의 57%, 제품정보의 90%를 입수
 - 기업 : 타깃전시회를 통해 매출의 25% 달성

- 전시회는 기술교류·발전의 촉매역할
 - 비교전시회를 통해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촉진과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는 '기술교류의 場'으로 발전
- 전시회 참가자의 참가목적 81%가 신제품·신기술 파악
 - * 해외사례 : CES, CeBIT 등 세계 유명전시회는 신제품 출시 및 기술 경영대회로 인식
 - * 국내사례
 - KIMES : 세계 의료기기기술 동향 소개 및 국내기술발전 촉진
 - Preview in Seoul : 섬유산업의 신소재개발과 고부가가치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	6,794	5,398	5,025	△373	△6.9
▪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5,069 (58개×87.4 백만×100%)	3,660 (50개×73.2백만×100%)	3,000 (39개×77백만×100%)	△660	△18
▪ 전시산업 기반구축	1,725 (5개×345백 만×100%)	1,738 (5개×347.6백만×100%)	2,025 (3개×675백만×100%)	287	16.5
☐ 비목(합계)	6,794	5,398	5,025	△373	△6.9
○ 민간경상보조(320-11)	6,794	5,398	5,025	△373	△6.9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지원강화를 위해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세계적 수준의 Global Top 전시회 등 우수전시회 육성
- 2020년 무역규모 2조불 달성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수출 마케팅 활동 지원 강화

-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 해외바이어 및 업체가 찾아오는 국제수준의 전시회 육성을 위해 우수전시회에 바이어유치비, 해외마케팅비 등 지원
- 사업평가·관리 및 무역전시 기반조성 : 국비지원 국내전시회 사업 성과의 체계적 평가·관리체계 구축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53.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36.60억원(50개×0.73억) ▪ 전시산업 기반구축 17.38억원
'17	5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30.00억원(39개×0.77억) ▪ 전시산업 기반구축 20.25억원
'18	50.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29.34억원(43개×0.68억) ▪ 전시산업 기반구축 21.00억원
'19	5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29.09억원(41개×0.7억) ▪ 전시산업 기반구축 21.00억원
'20	4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26.89억원(38개×0.7억) ▪ 전시산업 기반구축 23.00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및 대외무역법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 추진경위
 - '98년 무역전시사업 육성방안 기본계획 수립 및 정부지원('00년 10억원) 개시
 - '03.4월 국내전시회 지원 및 평가관리 강화 방안 대통령께 보고(무역진흥확대회의)
 - '04.6월 전시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확정·발표(경제장관간담회)

- '05.4월 대통령 전시·컨벤션산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표명 (KINTEX 개장식)
- '08.5월 글로벌TOP 전시회 육성 및 전시장 확충 필요성 대통령 보고(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08.11월 국내전시회, 상담회 등에 해외유력바이어 유치를 통한 수출지원 확대방안 대통령 보고(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08.12월 「전시산업발전법」 제정·시행('08.9.22)에 따른 「전시산업발전 기본계획(5년)」 확정·발표
- '09.11월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무역전시회 육성」 수립·시행
- '10.6월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시·회의산업 발전 방안」 확정
- '14.9월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제 2차 전시산업 발전계획 (5년)」 확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전시산업경쟁력 강화지원	8,407	7,381	6,794	5,398	5,02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84.07 (84.07)	- (-)	- (-)	84.07 (84.07)	84.07 (84.07)	- (-)	- (-)
'14년	73.81 (73.81)	- (-)	- (-)	73.81 (73.81)	73.81 (73.81)	- (-)	- (-)
'15년	67.94 (67.94)	- (-)	- (-)	67.94 (67.94)	67.94 (67.94)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13회계년도 결산 산업위 검토보고서
 - 소액다건 지원방식은 한계가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할 필요
 - (조치) 국고지원 대상 전시회 수 축소('13년 58개 → '16년 50개) 및 평가지표에 성장도 도입
- '14회계년도 결산 산업위 검토보고서
 - 지역특화전시회에 대한 성과제고 필요
 - (조치) 지역특화전시회를 포함한 국고지원 국내전시회의 성장 유인효과 제고를 위해 평가항목에 성장도 신설
 - 사후적으로 기본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시회에 대한 국고 보조금 환수조치 필요
 - (조치) 사후적으로 기본선정요건 충족하지 못한 전시회에 대한 국고보조금 환수근거 마련
- '14회계년도 결산 예결위 검토보고서
 - 정책지원전시회 선정방식 개선 필요
 - (조치) '16년 국고지원 대상 전시회에 정책지원전시회 제외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시기 - 2015년, 결과 - 미흡

○ 감사원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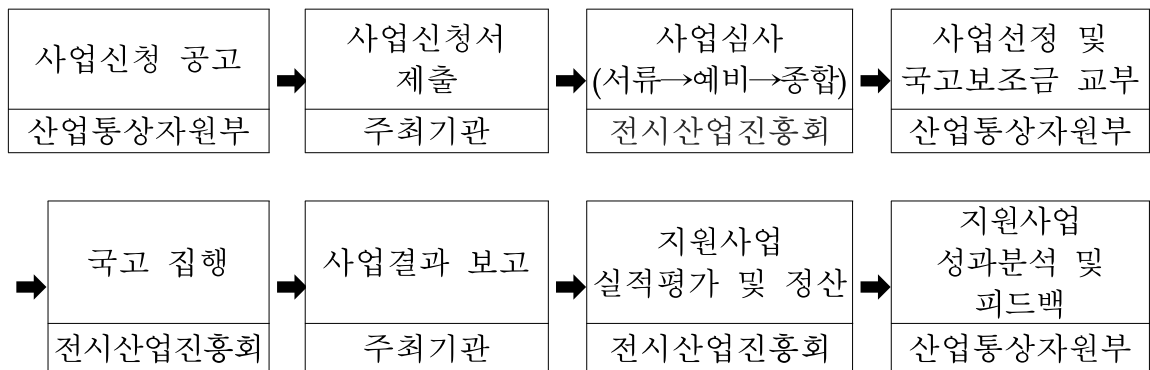
-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대상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필요('14년)
 - (조치) '15년 국고지원 대상전시회 선정 심사('14. 10월) 과정에서 내부위원으로 구성·운영되던 최종 심사 과정 폐지
 - '16년 국고지원 대상전시회 선정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국고지원 대상 전시회 선정('16.1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무역전시회 지원은 무역촉진 활동으로 분류되어 WTO 체제하에서도 지원이 가능하여 각국 정부는 자국의 수출증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전시회에 대한 지원확대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

국 가	지 원 내 역
홍 콩	매년 교역신고부담금에서 얻은 수익금을 일종의 지원금 형태로 준정부 기관인 HKTDC에 교부하여 동 기관이 년 130억원 수준의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 만	국내전시회에 해외바이어 초청을 위해 건강검진 보조, 숙박 및 항공 운임 보조
영 국	산업부에서 전략적 육성산업을 위한 전시회에 해외바이어 초청 비용의 1/2을 지원하고 관련업체 비즈니스 미팅 기회 제공
독 일	전시회 참가업체의 참가경비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AUMA(독일전시협회)를 통해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
미 국	국내 유망전시회를 선정하여 상무부 FCS 조직을 활용, 전시회 홍보 및 바이어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
프랑스	지방정부나 상공회의소 등이 통상활동 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전시회 참가경비의 일부를 지원
싱가포르	일류 국제전시 도시로 육성을 위한 IEC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인증 전시회에 대한 이중과세 감면 및 소득세 감면혜택 부여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참고

최근 5년간 국내전시회 지원 실적

구 분		'11	'12	'13	'14	'15
지원전시회수(건)*		47	59	58	55	58
지원예산 (백만원)	총	4,000	4,777	5,137	5,769	5,069
	평균	87.0	83.8	90.1	108.8	87.4
전시면적 (m ²)	총	1,163,672	1,221,355	1,238,887	1,112,480	1,595,853
	평균	25,297	21,427	21,735	20,990	27,514
참가업체 (개사)	총	15,600	16,795	17,715	16,811	20,720
	평균	339	295	311	317	357
	해외	3,661	3,641	4,239	3,763	4,322
	평균	80	64	74	71	75
참관객 (명)	총	2,213,105	1,644,722	2,576,326	1,725,253	2,860,469
	평균	48,111	28,855	45,199	32,552	49,318
	해외	41,892	48,741	61,316	55,290	131,145
	평균	911	855	1,076	1,043	2,261
	해외바이어	39,038	42,258	55,695	50,690	59,926
	평균	849	741	977	956	1,033
수출성과 (억불)	상담액	487	458	548	976	770
	평균	10.6	8.0	9.6	18.4	13.3
	계약액	49	33	44.8	33.2	48.4
	평균	1.1	0.6	0.8	0.6	0.8

* 지원전시회수는 합동통합전시회 제외. 정책전시회인 ('11) 산업대전 ('13) GTI ('14) GTI, Health ('15) GTI 포함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4,785	5,258	5,248	△10	△0.2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3 - 1100 - 1133 - 501

* 담당자 : 무역정책관(박진규), 무역안보과(최장관, 044-203-4050), 사무관(이희동, 405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계속('04년 ~)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전략물자 취급 기업, 연구기관, 관련 부처 등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전략물자관리원

2. 사업목적

- 국제 무역규범인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국내 이행 기반 조성을 통한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효율성 확보 및 우리 기업의 피해 예방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① 전략물자관리원 기관운영 : 3,460백만원
 - 인건비(연봉, 제수당 등) : 2,715백만원
 - 기본운영비(사무실 임·관리비, 기타 관리비) : 745백만원
- ② 전략물자 안전수출 지원 : 351백만원
 - (전략물자 판정) 기업 신청에 따라 수출 물품 및 기술 등에 대한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351백만원)
- ③ 전략기술 수출관리 선진화 : 422백만원
 - (인프라 및 이행지원 도구 개발) 전략기술 사전확인, 전략기술 해당여부에 대한 자체적 확인 도구 개발, 제도 정비 등(362백만원)

- (전략기술 자율관리체계 구축) 대학 및 연구기관 대상 자율관리체계 구축 지원(60백만원)

④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 확산 : 696백만원

- (CP 구축지원 및 제도 내실화) 수출기업의 자율준수체제(CP) 구축과 정부의 CP 지정심사 및 제도 개선·운영을 전방위적으로 지원(60백만원)
- (중소기업 이행지원) 중소기업이 제도 미인지로 불법수출에 연루되지 않도록 집중 교육·홍보 및 컨설팅(370백만원)
- (전략물자 관리제도 교육·홍보)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이행유도로 불법수출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167백만원)
- (국내외 수출통제 현안 및 동향 조사·분석) 수출통제 국제동향 조사, 제도 분석 등 정책연구 및 정책제언,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22백만원)
- (전략물자 국제협력) 수출통제 국제규범 형성시 우리나라 입장 반영 및 해외 정부·기관과 공조 강화(77백만원)

⑤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 319백만원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등 전산자원 유지·관리(267),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시스템 정보보안 강화(52)

□ 지원 필요성

-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의무 준수 및 기업의 불법수출 사전예방을 위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업무이나,
 - 판정, 조사·분석, 교육·홍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수출통제 업무 수행을 위해 설립된 전략물자관리원에 위탁
- 전략물자관리원이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위탁사업 추진재원의 적기지원 필요
 - 특히, 전략물자 판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

< 세 부 내 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B-A)	%
☐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4,785	5,258	5,248	△10	△0.2
<div> <div>■ 전략물자관리원 기관운영</div> <div>2,920</div> <div> 3,382 (인건비 2,523백만원 =56백만원×45명×100%, 경상비 859백만원=19 백만원×45명×100%) </div> </div>			<div> <div>3,460</div> <div> (인건비 2,715백만원=58백 만원×47명×100%, 경상비 745백만원=16백 만원×47명×100%) </div> </div>	78	2.3
<div> <div>■ 전략물자 안전수출 지원</div> <div>351</div> <div> 351 (351백만원=0.02백만 원×약15,000건×100%) </div> </div>			<div> <div>351</div> <div> (351백만원=0.02백만원× 약15,000건×100%) </div> </div>	-	-
<div> <div>■ 전략기술 수출관리 선진화</div> <div>422</div> <div> 422 (인프라 및 이행지원 도구 개발 362백만원, 전략기술 자율관리체계 구축 60백만원) </div> </div>			<div> <div>422</div> <div> (인프라 및 이행지원 도구 개발 362백만원, 전략기술 자율관리체계 구축 60백만원) </div> </div>	-	-
<div> <div>■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 확산</div> <div>773</div> <div> 784 (CP 구축 지원 60백만원, 중소기업 이행 지원 458백만원, 교육홍보 167백만원, 국제체제 대응 99백만원) </div> </div>			<div> <div>696</div> <div> (CP 구축 지원 60백만원, 중소기업 이행지원 370백만원, 교육홍보 167백만원, 국제체제 대응 99백만원) </div> </div>	△88	△11.2
<div> <div>■ 온라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div> <div>319</div> <div> 319 (전략물자관리시스템 등 전산자원 유지관리 267백만원, 정보보안 52백만원) </div> </div>			<div> <div>319</div> <div> (전략물자관리시스템 등 전산자원 유지관리 267백만원, 정보보안 52백만원) </div> </div>	-	-
☐ 비목(합계)	4,785	5,258	5,248	△10	△0.2
○ 민간경상보조(320-01)	4,785	5,258	5,248	△10	△0.2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안전한 수출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물자 관리 강화
 -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대내외 수출통제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 제도 개선 및 정책연구를 통한 기업의 이행부담 경감
- 고객중심의 전략물자관리 체계 고도화
 - 전략물자 판정의 정확성 및 신속성 강화
 - 교육·홍보 확대 및 컨설팅 기능 강화를 통한 맞춤 서비스 제공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52.58	▪ 전략물자관리원 운영 및 수출관리 지원사업 : 52.58 (52.58억원×1개×100%)
'17	52.48	▪ 전략물자관리원 운영 및 수출관리 지원사업 : 52.48 (52.48억원×1개×100%)
'18	52.58	▪ 전략물자관리원 운영 및 수출관리 지원사업 : 52.58 (52.58억원×1개×100%)
'19	52.58	▪ 전략물자관리원 운영 및 수출관리 지원사업 : 52.58 (52.58억원×1개×100%)
'20	52.58	▪ 전략물자관리원 운영 및 수출관리 지원사업 : 52.58 (52.58억원×1개×10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대외무역법 제29조

< 대외무역법 제29조(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
① 전략물자의 수출입 업무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한다.
⑤ 전략물자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판정 업무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3.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업무
3의2. 제5조제4호 및 제4조의2에 따른 조치의 이행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업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⑧ 정부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국제 무역규범인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의무이행 사업으로서 대외무역법(제19조~제31조)에 근거하여 추진

* UN안보리결의1540호('04.4.28)에 의거 모든 회원국은 전략물자 수출관리 의무화

< 주요 추진사항 >

- '93년 : 전략물자 국내수출통제제도의 도입
- '95년 : 국제 비확산수출통제체제 가입
 - * 핵공급그룹('95), 바세나르체제('96), 호주그룹('96), 미사일기술통제체제('01)
- '01.09 : 미국 9.11테러로 국제수출통제제도 강화
- '03.12 : 전략물자 HS코드화 등 우리나라 수출 통제체제 정비 및 이행체제 마련
- '04.01 :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사업 최초 수행
- '04.08 : 무역협회 부설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개설
- '07.06 :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전략물자관리원 설립으로 법인화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전략물자수출입 통제기반구축	40.09	48.59	47.85	52.58	52.4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40.09 (40.09)	- (-)	- (-)	40.09 (40.09)	40.09 (40.09)	- (-)	- (-)
'14년	48.59 (48.59)	- (-)	- (-)	48.59 (48.59)	48.59 (48.59)	- (-)	- (-)
'15년	47.85 (47.85)	- (-)	- (-)	47.85 (47.85)	47.85 (47.85)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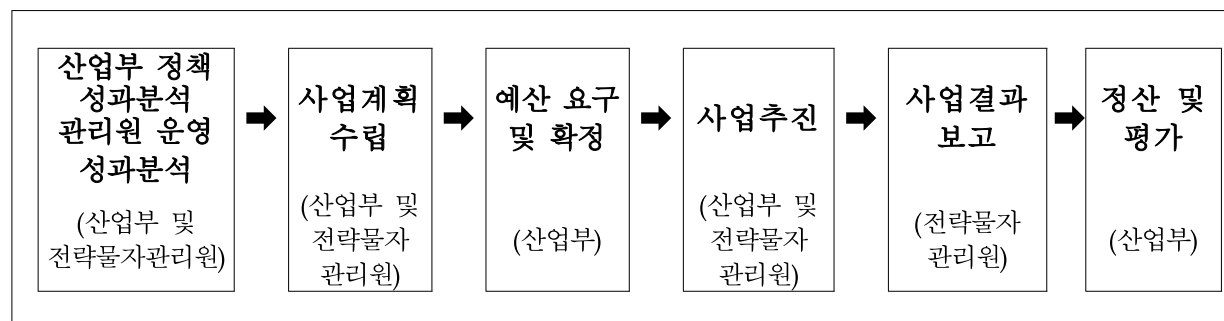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15년) : 매우우수(90.0점)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국가	담당부서	담당인원	수출허가 건수	예산
미국	상무부 BIS 국무부 DDTC 재무부 OFAC 등	BIS 390명	('14)30,953	10,150만불 ('14년, BIS)
영국	기업혁신기술부 ECO 외무성 비확산국 국방부	ECO 77명	('14)13,145	300만파운드 ('11년, ECO)
독일	경제수출통제청 (BAFA)내 4개부	BAFA 714명	('14)55,000	2,940만유로 ('08년)
한국	산업부(개과, 방사청, 원안위, 통일부	산업부(무역안보과) 9명 *전략물자관리원 45명	('15)4,438	47.85억원 ('15년)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참고 1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개요

□ 전략물자 수출통제 개념

- 국제평화 및 안보를 위해 전략물자*가 이란, 북한 등 우려국가, 테러집단 등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제도

⇒ 전략물자 수출시 정부의 수출허가 필요

* 대량파괴무기(WMD) 및 그 운반수단의 제조에 이용가능한 물품·기술·S/W

-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 운영 중

구 분	통제대상 물자 및 기술	회원국	발족년도	한국가입
핵공급국그룹 (NSG)	핵 무기 (원자력전용 및 이중용도품목·기술)	48개국	1978년	1995년
호주그룹 (AG)	생 화학무기 (생화학물질 및 이중용도품목·기술)	42개국	1985년	1996년
미사일기술통제 체제 (MTCR)	미사일 및 운반체 (미사일 및 이중용도품목·기술)	34개국	1987년	2001년
바세나르체제 (WA)	재래식 무기 (군용물자 및 이중용도품목·기술)	41개국	1996년	1996년

* 4개 국제체제 모두 가입한 국가 : 29개국("가" 지역으로서 완화된 허가정책 적용)

□ 국제 수출통제 연혁

- 냉전시대에 서방국가는 對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를 결성하여 첨단무기 및 기술의 공산권 유입을 통제('49~'94)
- 탈냉전 이후, 미국 등은 4개의 다자간수출통제체제를 설립하여 전략물자의 우려국가 및 테러집단 유입을 통제('96~현재)

참고 2 우리나라 제도 및 운영 현황

□ 개 요

- '87년,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비확산협약에 모두 가입

* 가입년도 : NSG('95), AG('96), WA('96), MTCR('01), BWC¹⁾('87), CWC²⁾('97)

- 전략물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략물자수출입관리시스템(Yestrade, '05.2), 전략물자관리원 설립('07.6) 등 지원체계 마련

* Yestrade를 통해 전략물자 판정, 허가 신청 등 수출통제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

□ 수출통제 제도 주요내용

-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협약에서 지정한 통제 물품 등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물자로 지정·고시
-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기업자체 판정을 통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허가를 거쳐 수출

【 국내 수출관리 관련 부처 현황 】

소관부처	근거법령	통제 품목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법	이중용도용품(Dual-Use)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	방산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원자력 전용품목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北韓 반출입 물품

□ 운영 현황

- 정부는 정책방향 결정 및 수출허가업무를 수행하고, 판정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전략물자관리원이 수행

1) 생물무기금지협약(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 생물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을 금지한 국제조약
 2) 화학무기금지조약(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 화학무기의 개발과 생산·사용을 금지한 국제조약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계속, 국정과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2,936	2,696	2,696	-	-

* 사업코드 : 19 - 11 - 0 - 113 - 1100 - 1134 - 302

* 담당자 : 무역정책국장(박진규), 무역협력과장(이원희, 044-203-4840), 사무관(오성진, 4841)

* 국정과제 : 5-1(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7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참여 대학생 700여명 및 650여개 중소기업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5천만원이상 매칭
사업시행주체	한국무역협회

2.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는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과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
 - 교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각 지역별 전문가의 양성 및 공급이 시급
 - * 동 사업은 공약사업이자 국정과제(“현지 전문가를 집중 양성을 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수립”, ‘13.1.28)임
- 특히 지방 내수기업·수출 초보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중견·강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역전문가 양성·공급에 중점
 - (내수기업·수출초보기업) 지역전문가 수급 애로 단기 해소방안으로 “특화지역별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제공
 - (중견·강소기업) 전문인력 자체확보를 위한 지역청년인재 양성방안으로 지역별 산업별 특화과정 재편 및 취업연계과정 마련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GTEP*)

* GTEP : Glocal Trade Experts Incubating Program

- 무역실무 및 심화교육비 지원 : 무역실무(기본교육, 현장실무컨설팅), 심화교육(지역특화과정, 특별과정) 등을 위한 교육비 736백만원

<산출내역>

- 무역실무(기본교육 및 현장실무컨설팅) : 276백만원

- 기본 교육비 : 172.5백만원 (24.6만원×700명)
- 현장컨설팅교육비 : 103.5백만원 (431만원×24개 대학)

- * 기본교육(무역협회 시행) : 무역실무, 해외마케팅 등 무역기초(50시간) 교육
- * 현장실무컨설팅교육(전문컨설팅업체 시행) : 사업단별 전담 컨설턴트가 산학협력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등 수출마케팅 현장실무 교육

- 심화교육(지역특화과정, 특별과정) : 460백만원

- 지역특화과정 : 207백만원 (862.5만원×24개 대학)
- 특별과정 : 253백만원 (1,054만원×24개 대학)

- * 지역특화과정(각 대학 시행) : 8개 해외특화지역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역 전문가초청특강, 어학교육, 지역별 상관습, 통상 등 특화과정 교육(90시간)
- * 특별과정(각 대학 시행) : FTA, 전자무역, 전자상거래 과정, 취업특강 등 시행(50시간)

- 산학협력현장실습비 지원 : 중소기업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해외 특화 지역 중심 수출마케팅 현장실습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1,273백만원

<산출내역> : 1,273백만원(181.9만원 x 700명)

- 인건비 및 간접비 지원 : 24개 대학별 사업단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고용 및 사업단 운영지원비(간접비) 683백만원

<산출내역>

- 인건비 : 611백만원 (25.5백만원 x 24개 대학)
- 간접비 : 72백만원 (3백만원 x 24개 대학)

- 운영비 및 관리비 지원 : 4백만원

<산출내역> : 우수사례경진대회 개최 지원 4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정과제 5-1 "중소·중견기업 역량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중**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지역전문가를 양성**
- **(VIP 지시사항, '13.1.28) *경제 2분과 업무보고**
중소기업들이 자신들도 '해외에 진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현지 전문가도 부족해서 업무를 못내는 거예요.....현지 전문가를 집중 양성을 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조적 수출 부진 해소) 수출경쟁력 회복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무역인력의 지속적 공급 필요

- (무역 전문인력 부족) 최근 수출부진 속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무역업계의 무역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

* 수출기업 중 무역인력 부족을 호소한 기업은 26.4%, 부족인원은 기업당 1.74명

**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무역인력(54.9%)을 최우선으로 필요

<수출경쟁력 제고 위한 필요인력>						
(N=1,000, 단위 %)						
필요 인력	무역 인력	연구 개발 인력	품질 관리 인력	생산 직 인력	기타	필요 인력 없음
응답 비 중	54.9	22.1	11.9	5.8	1.0	4.3

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출기업이 바라는 무역인력 수요와 공급방안('15.11월)
- 2014년 수출기업 1,000개사 대상 조사

- (기업의 요구사항) 중소·중견 내수기업들은 수출기업화 및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외국어 능력, 무역실무, 해당 산업·품목에 대한 이해 등 무역업무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함

○ (수요 맞춤형 교육사업 수행)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산학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인문·상경계 대표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함

- (현장중심의 무역특화 교육 시행) 동 사업참여 대학은 이론을 바탕으로 업계의 수요를 커리큘럼에 적극 반영, 실무지식과 현장경험이 접목된 특화교육 실시

* 현장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참여 기업들의 높은 평가(만족도 91.2%) 획득

- (무역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무역인력 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및 전국 중소기업과 GTEP 수료 인력과의 일자리 매칭 활동 강화를 통해 전국 중소기업의 무역인력 부족 해결에 큰 기여

* 취업률 68.9%('07~'14년 평균)로 '14년 4년제 대학 평균취업률(54.8%)보다 상회

- 수출기업 지원 및 청년취업 촉진을 위해 동 사업의 지속적 추진 필요

• (VIP 강조사항, '15.7.15) *국제에너지트레이딩센터 방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선) 에너지·금융·무역 등 이론에 더해 현장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가 육성되어야 한다”며 “교육기관은 기업의 현장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줄 것”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 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2,936	2,696	2,696	0	0
☐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 (산출근거)	2,936	2,696 ① 무역실무/심화교육비 : 736 ② 산학협력현장실습비 : 1,273 ③ 인건비 및 간접비 : 683 ④ 운영비 및 관리비 : 4	2,696 ① 무역실무/심화교육비 : 736 ② 산학협력현장실습비 : 1,273 ③ 인건비 및 간접비 : 683 ④ 운영비 및 관리비 : 4	0	0
☐ 비목(합계)	2,936	2,696	2,696	0	0
○ 민간경상보조(320-01)	2,936	2,696	2,696	0	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대내외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무역·산업·지역전문성을 갖춘 융합형·현장중심형 무역인력의 양성 및 공급
 - 기존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을 지역전문가 육성사업인 지역 특화사업으로 개편
 - * ‘14년 5개 대학(130명)→ 15년부터 24개 전 대학(700명)으로 확대
- 특히, 지방소재 대학을 확대하여 많은 지방대생들에게 이론중심의 대학 교육에 실무지식과 현장경험을 접목한 무역관련 교육기회 제공 및 취업지원
 - * 서울소재 대학 축소 : ‘14년 3개 대학 → ‘15년 2개 대학 (△1)
- 향후 FTA, 전자상거래, 서비스무역 확산 등 사업여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참여대학별 맞춤형 현장실습 커리큘럼의 도입 등을 통해 지역전문가양성사업의 내실화 도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26.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실무 등 교육비 : 14.23 ▪ 산학협력현장마케팅실습비 : 12.73
'17	26.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실무 등 교육비 : 7.36 ▪ 산학협력현장마케팅실습비 : 12.73 ▪ 인건비 및 간접비 지원 : 6.83 ▪ 운영비 및 관리비 지원 : 0.04
'18	23.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실무 등 교육비 : 7.36 ▪ 산학협력현장마케팅실습비 : 9.3 ▪ 인건비 및 간접비 지원 : 6.83 ▪ 운영비 및 관리비 지원 : 0.04
'19	23.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실무 등 교육비 : 7.36 ▪ 산학협력현장마케팅실습비 : 8.83 ▪ 인건비 및 간접비 지원 : 6.83 ▪ 운영비 및 관리비 지원 : 0.04
'20	19.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실무 등 교육비 : 6.00 ▪ 산학협력현장마케팅실습비 : 6.34 ▪ 인건비 및 간접비 지원 : 6.83 ▪ 운영비 및 관리비 지원 : 0.04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 제4조(무역거래 기반조성 사업 및 시행기관) 제①항, ③항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무역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 제①항

①정부는 무역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정과제 5-1("현지 전문가를 집중 양성을 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수립", '13.1.28)

• 국정과제 5-1 "중소·중견기업 역량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지역전문가를 양성**
• (VIP 지시사항, '13.1.28) *경제 2분과 업무보고
중소기업들이 자신들도 '해외에 진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현지 전문가도 부족해서 업무를 못내는 거예요.....현지 전문가를 집중 양성을 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경위

- '00. 7월 :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 추진
- '01. 9월 : Trade Incubator 사업 추진
- '07. 7월 :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 폐지 및 Trade Incubator 사업을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으로 확대개편
- '08. 3월 : 글로벌청년리더 10만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 포함
- '13. 1월 : 지역전문가양성사업 국정과제 포함
- '14. 7월 :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으로 개편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32.62	32.62	29.36	26.96	26.9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32.62 (32.62)	()	()	32.62 (32.62)	32.62 (32.62)	()	()
'14년	32.62 (32.62)	()	()	32.62 (32.62)	32.62 (32.62)	()	()
'15년	29.36 (29.36)	()	()	29.36 (29.36)	29.36 (29.36)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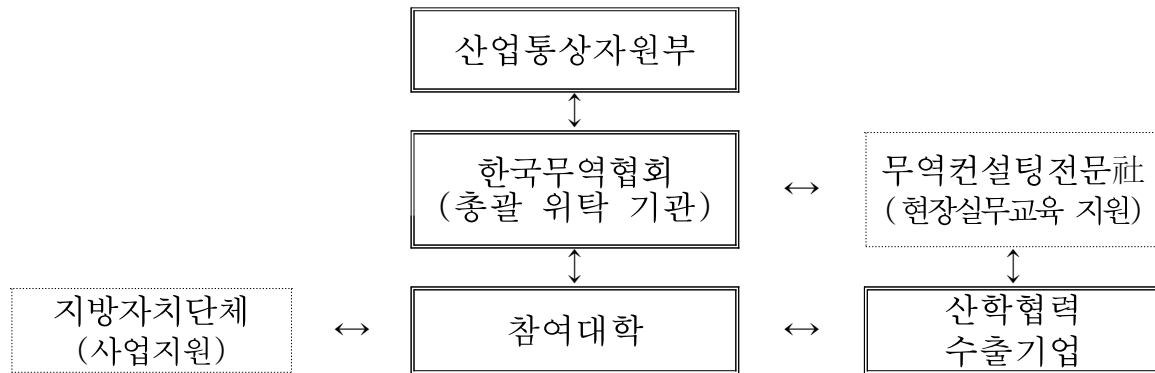
○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전문가 공급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하고, 사업부실대학에 대한 성과개선 방안을 마련('15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

⇒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청년취업 촉진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을 추진 중이며, 사업단 전체 현장점검 실시('16.5~9월) 등을 통해 사업단 관리를 철저히 시행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호 주 : 무역 또는 관세관련 특성화 대학 존치
- 중 국 : 북경대외경제무역대학 등 전문대학에서 무역인력 양성
- 네덜란드·홍콩·대만 : 무역진흥을 목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무역인력 양성사업 추진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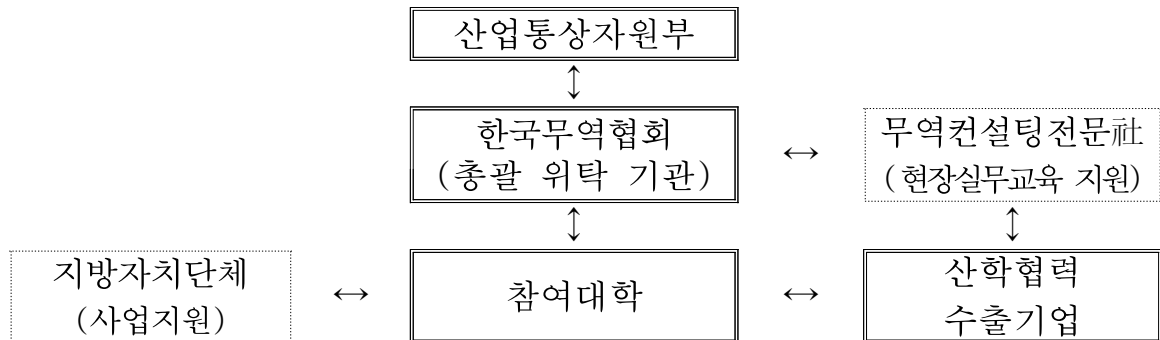
참고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개요

□ 사업 개요 (10기, 현재 운영중)

○ GTEP 운영 체계

- 전국 4년제 대학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GTEP)사업단”을 설치하여 산·관·학 융합형 무역실무 및 현장실습 교육 실시



○ 교육기간 : 1년 3개월(2016. 1. 1 ~ 2017. 3.31)

○ 교육인원 : 731명, 대학교 2~4학년(각 대학당 25명 이상)

* (6기) 757명→(7기) 776명→(8기) 745명→(9기) 701명→(10기) 731명

○ 교육내용

- 기본·심화교육, 실무컨설팅교육, 무역현장마케팅실습 등 총 420시간 이상

<GTEP 교육 프로그램>

교육명	세부교육	교육시간	학점	교육기관	내 용
기본교육	온라인교육(사전)	30	3	무역 협회	수출입개요 및 마케팅실무
	집체교육	30			현장실무, 기본소양, 특강
	소 계	60	3		
심화교육	지역특화과정	90	3	대학	어학, 이문화상관습, 시장진출전략 등
	정규과정	90	6		전공과목
	특별과정	50			전자상거래, FTA, 취업/창업 특강
	소 계	230	9		
실무컨설팅 교육	현장실무컨설팅	30	-	컨설팅 전문기관	마케팅 실무 교육, 산학협력 컨설팅 해외시장진출전략보고서
무역현장 마케팅실습	산학협력 중소기업 현장지원	100시간 이상	3	대학	산학협력체결, 업체현장마케팅 지원 등
합 계		420이상	15		

- 참여대학 : 전국 5大 권역별(8개 특화지역) 24개 대학 선정(35개 대학 신청)
 - * 8개 지역 : 중화권(8), 동남아(5), 중앙아(3), 인도(2), 유럽(2), 중남미(2), 중동(1), 아프리카(1)

<제10기 24개 참여대학 현황>

권역	특화지역 및 GTEP사업 참여대학	
서울	(중화권)건국대	(유럽)송실대
수도권	(중화권)단국대 (중남미)한국산업기술대 (동남아)강원대, 한국외국어대(용인)	(중앙아)인하대
충청권	(동남아)순천향대, 한남대 (중남미)청주대	(중화권)남서울대 (인도)충북대
전라권	(중화)광주대, 목포대, 전북대, 제주대 (아프리카)호원대	
경상권	(동남)신라대 (중앙아)동국대(경주), 인제대 (중동)영남대 (유럽)한국해양대	(중화)계명대 (인도)영산대

○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14 (8기)	'15 (9기)	'16 (10기)
국고보조금	3,262	2,936	2,696
대응자금(Matching)*	1,750	1,830	1,935
합 계	5,012	4,766	4,631

* 대응자금(Matching Fund) : 사업단(대학)별 5천만원 이상으로 당초 목표치인 12억원을 초과 달성

□ 교육수료 현황

- '07년 이후 총 6,970명이 기본교육을 수료했고 이중 5,489명이 수료하여 전체 수료율은 78.8%임
 - * 수료율 추이 : 1기(61.2%) → 2기(61.8%) → 3기(69.6%) → 4기(77.6%) → 5기(82.9%) → 6기(86.1%) → 7기(88.1%) → 8기(90.7%) → 9기(91.2%)
- 엄격한 이수요건(평가, 외국어, 현장실습)을 거쳐 무역실무 및 컨설팅능력을 겸비한 무역전문가 배출 유도
- 중소·중견기업의 전문인력확보를 위한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공급의 역할 수행

대한상사중재원지원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대한상사중재원지원	1,100	971	840	△ 131	△ 13.5

* 사업코드 : 19 - 11 - 0 - 110 - 113 - 1100 - 1136 - 301

* 담당자 : 무역정책관(박진규), 무역정책과장(노건기, 044-203-4020), 주무관(강미래, 401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3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클레임 해결목표 13,800건 (중재 420건, 알선 및 상담 13,380건)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사업시행주체	대한상사중재원

2. 사업목적

- FTA 확대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무역클레임과 상거래상의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중재, 알선·상담 지원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클레임 해결 서비스 지원 : 국제무역 확대에 따른 국제분쟁 해결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 840백만 원 요구
 - ① 중재사업 지원비 : 690백만 원
 - 중재판정비 등 : 380백만 원
 - 심리개최 등 중재절차진행 : 150백만 원
 - 중재제도 홍보 및 절차이용안내 : 60백만 원
 - 전산시스템 관리·개선 : 100백만 원

② 알선·상담사업 지원비 : 150백만 원

· 알선상담 등 절차진행 : 140백만 원

·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네트워크구축 : 10백만 원

※ 중재사업지원비 : (중재사건 1건당 처리부족액 179만원×385건)+전산구축 130백만원 [2016년]
→ (중재사건 1건당 처리부족액 164.2만원×420건 [2017년]

※ 알선상담사업지원비 : 알선상담 1건 11.3천 원×13,365건 [2016년]
→ 알선상담 1건 11.2천 원×13,380건 [2017년]

□ 지원 필요성

○ 중재는 무역클레임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

- 법원의 재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이 내린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적인 법정제도**
- 무역클레임 발생시 양국간 법제도 차이, 송달지연 등으로 인하여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는 동일한 효력을 지닌 중재를 통해 해결

○ 중재·알선을 통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분쟁해결비용 절감**

- 신청금액에 따라 상이하나 법원의 3심제 소송에 비하여 단심으로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므로 시간·비용 절감 가능

< 중재와 소송비용 비교 >

(단위 : 천원)

신청금액	중재관리요금	소송비용	
		1심	3심
1천만원	45	110	406
2천만원	90	155	609
3천만원	135	230	841
5천만원	225	321	1,246
1억원	450	546	2,259
2억원	850	946	4,059

- 무료 알선 및 상담을 통한 소상공인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유도로 불필요한 법률비용 경감

○ 중재 및 알선상담사업의 공공재 기능 강화 필요

- 우리나라에서 중재를 이용하는 고객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내지 영세자영업자임
- 전체 중재건의 약 60%가 신청금액 2억원 이하 소액사건
- 현재 국고보조금 지원은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라는 공공재적 기능을 지님
- 중재, 알선 및 상담의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분쟁 해결절감을 위해서는 동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 ADR(대체적 분쟁해결제) 전반에 대한 저변 확대가 필수적임

○ 이와 같은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사업수입(중재수수료) 증대는 한계가 있고, 공공재 기능의 강화를 위해 국고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대한상사중재원지원	1,100	971	840	△131	△13.5
▪ 중재사업지원비 (산출근거)	950	820 (중재사건 1건당 처리부 족액 179만원×385건)+전 산구축 130백만원	690 (중재사건 1건당 처리부족액 164.2만원×420건)	△130	△15.9
▪ 알선상담사업지원비 (산출근거)	150	151 (알선상담 1건 11.3천 원×13,365건)	150 (알선상담 1건 11.2천원 ×13,380건)	△1	△0.7
□ 비목(합계)	1,100	971	840	△131	△13.5
○ 민간경상보조(320-01)	1,100	971	840	△131	△13.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한-중 등 FTA 체결국 확대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무역 분쟁 증가에 대비
 - 소액중재사건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분쟁 애로 해결에 기여
 - * 중재의 약 60%가 분쟁금액 2억원 이하의 중소상공인 관련 사건
 - 중재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고객 감동 서비스 제공
 - * 중재사건처리기간 단축으로 클레임 비용 경감 추진
- 범국민적인 분쟁해결·예방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기존의 무역 분야 등의 중재서비스 증진과 함께 ISD 관련 투자 중재, 금융 등 중점육성분야 관련 분쟁해결 역량 마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9.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사건 처리비용 : 820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79만원 × 385건 + 전산구축 130백만원) ▪ 알선상담사건 처리비용 : 151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1.3천원 × 13,365건)
'17	8.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사건 처리비용 : 690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64.2만원 × 420건) ▪ 알선상담사건 처리비용 : 150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1.2천원 × 13,390건)
'18	8.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사건 처리비용 : 695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63만원 × 425건) ▪ 알선상담사건 처리비용 : 154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1.2천원 × 13,750건)
'19	8.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사건 처리비용 : 677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63만원 × 415건) ▪ 알선상담사건 처리비용 : 130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1.2천원 × 11,610건)
'20	7.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사건 처리비용 : 660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63만원 × 405건) ▪ 알선상담사건 처리비용 : 123백만원 (1건당 처리비용 11.2천원 × 11,000건)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중재법 보칙 제40조,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 중재법 보칙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정부는 이 법에 의하여 국내외 상사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 사단법인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무역거래 기반조성 사업 및 시행기관)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66. 3 : 대한상공회의소내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창립
- '70. 3 :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 설립
- '80. 8 :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개편
- '93년부터 국고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대한상사 중재원지원	11	11	11	9.71	8.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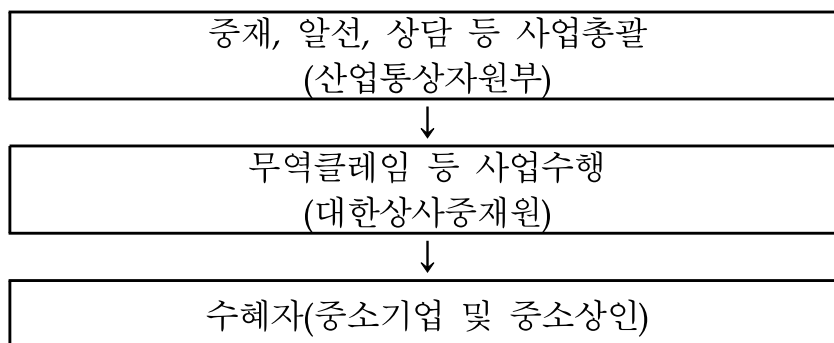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 보통(2013년)
- 국회 산업위 김수민, 박정, 이찬열의원 ,예결위 유동수의의원 서면질의(2016년)
 - 대한상사중재원 지원 사업의 취지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고, 신규 FTA 체결에 의한 중소기업 무역분쟁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 추가지원 필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 * 싱가포르 정부가 건립한 복합건물(맥스웰챔버스)에 입주(4백억원 투입)
 - * '10년 신규건물 입주 후 중재사건 지속적 증대, '12년 200건 최초 돌파
- 홍콩 국제중재센터(HKCIAC)
 - * 홍콩정부 소유건물(홍콩국제금융센터)에 입주
 - * 연간 임대료 무상지원(1원) 및 최근 임대면적 2배 확장
-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법률사무부 산하 기관
 - * 2015년 중재사건 : 1,968건, 자원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보조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클레임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11	'12	'13	'14	'15
중 재	323	360	338	382	413
알 선	915	938	916	916	939
상 담	11,339	11,500	11,697	12,783	12,380
합 계	12,577	12,798	12,951	14,081	13,73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의무,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20,451	234,394	216,682	△ 17,712	△ 7.6%

* 사업코드 : 21 - 11 - 0 - 113 - 1100 - 1137 - 301

* 담당자 : 무역정책관(박진규), 무역진흥과장(박덕열, 044-203-4030), 사무관(전용옥, 403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62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사업목적

-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 인력 유치 지원을 통해 수출 진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

-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바이어 찾기, 무역사절단, 전시회, 현지법인설립, 지적재산권 보호 등

- 해외시장 정보 생산·전파 및 컨설팅

* 해외 마케팅 및 투자진출 컨설팅, 해외시장정보 수집·설명회 개최 등

- 외국인 투자유치

*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유치활동 전개, 기(既)진출 외투기업 고충처리 등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조직망운영비 : 53,739백만원

- KOTRA 해외 무역관 126개소 및 국내 조직망 1개소 운영에 소요되는 임차료, 관리비 등 운영비

② 인건비 : 111,335백만원

- 정규직(855명), 별정직(130명), 별도정원(6명) 및 현지직원(521명) 등 총 1,562명에 대한 인건비

③ 경상운영비 : 2,496백만원

- 사옥관리, 제세공과금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

④ 사업비 : 49,112백만원

- 해외마케팅지원(37,488백만원), 해외투자진출지원(1,000백만원), 외국인투자유치지원(4,124백만원), 해외정보조사(6,000백만원), 해외전문인력유치(500백만원) 등 사업비

☐ 지원 필요성

- 국가발전을 견인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역량 강화, 신흥시장개척,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KOTRA의 해외 수출마케팅 및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강화 필요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추진전략 중 '역동적인 혁신경제'(해외진출촉진), '내수·수출 균형경제'(투자촉진, 중소·중견기업 성장촉진) 등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 정부의 중점 투자방향인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강화 및 주력산업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 및 동반성장 협력 생태계 조성

< 세 부 내 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B-A)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20,451	234,394	216,682	△17,712	△7.6
▪ 조직망운영비	63,907 (해외 무역관 운영경비)	63,907 (해외 무역관 운영경비)	53,739 (해외 무역관 운영경비)	△10,168	△15.9
▪ 인건비	92,372 (국내급여, 해외수당, 해외현지직원)	103,595 (국내급여, 해외수당, 해외현지직원, 법정복 리후생비)	111,335 (국내급여, 해외수당, 해외현지직원, 법정복 리후생비)	7,740	7.5
▪ 경상경비	7,295 (법정복리후생비, 제세공 과금, 사육관리 등 기관 운영 기본경비)	2,391 (제세공과금, 사육관리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	2,496 (제세공과금, 사육관리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	105	4.4
▪ 예비비(경평성과급)	11,870	11,870	-	△11,870	-
▪ 사업비	45,007 ·해외마케팅지원 33,628 ·해외투자진출지원 3,599 ·외국인투자유치지원 3,624 ·해외정보조사 3,200 ·해외전문인력유치 956	52,631 ·해외마케팅지원 37,851 ·해외투자진출지원 2,720 ·외국인투자유치지원 4,504 ·해외정보조사 6,600 ·해외전문인력유치 956	49,112 ·해외마케팅지원 37,488 ·해외투자진출지원 1,000 ·외국인투자유치지원 4,124 ·해외정보조사 6,000 ·해외전문인력유치 500	△3,519	△6.7
☐ 비목(합계)	220,451	234,394	216,682	△17,712	△7.6
○ 민간경상보조(320-01)	220,451	234,394	216,682	△17,712	△7.6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무역·투자유치 견인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유망기업 글로벌 기업 육성, 외국기업 투자유치 확대
- 새로운 글로벌 시장 개척 : 신성장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신시장 개척, 신무역방식에 대한 대응력 강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고객가치와 상생협력 최우선 :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대고객 통합 솔루션 제공, 서비스 점점 강화를 통한 현장형 사업 개발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2,344	▪ 조직망운영비: 639, ▪ 인건비: 1,036, ▪ 사업비: 526, ▪ 경상운영비: 24, ▪ 예비비(경평성과급): 119
'17	2,167	▪ 조직망운영비: 538, ▪ 인건비: 1,113, ▪ 사업비: 491, ▪ 경상운영비: 25, ▪ 예비비(경평성과급): 0
'18	2,175	▪ 조직망운영비: 639, ▪ 인건비: 1,036, ▪ 사업비: 357, ▪ 경상운영비: 24, ▪ 예비비(경평성과급): 119
'19	2,162	▪ 조직망운영비: 639, ▪ 인건비: 1,036, ▪ 사업비: 344, ▪ 경상운영비: 24, ▪ 예비비(경평성과급): 119
'20	2,151	▪ 조직망운영비: 639, ▪ 인건비: 1,036, ▪ 사업비: 333, ▪ 경상운영비: 24, ▪ 예비비(경평성과급): 119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62.4.24 제정)
 - * '95.8.4개정(투자업무 추가), '03.9.29 개정(무역투자인력양성기능 추가)
- 대외무역법 제4조 : 무역의 진흥을 위한 물품 등의 수출입 지원
 1. 무역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홍보, 전시, 연수, 상담 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
 2. 무역전시장이나 무역연수원 등의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대외무역법 제8조 :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
 - * '09.4.22 개정(해외진출지원센터 신설)

○ 추진경위

- '62년 무역진흥 등을 위해 대한무역진흥공사 설립
- '95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투자유치', '산업기술협력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국가무역투자진흥기관(TPO)으로 출범
- '98년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신설 및 '99.10월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 개설을 통한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강화
- '02년 해외지역본부제를 출범, 8개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본사인력을 전진 배치하여 해외 현장지원인력 보강
- '03년 Invest KOREA 출범, '04년 정보조사본부, '05년 전략마케팅본부, 고객지원본부 및 '07년 Global Korea를 각각 신설
- '06.10월 제4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의료산업 해외마케팅 서비스·정보제공 창구를 산자부로 일원화 결정
 - * KOTRA에 의료산업 해외마케팅지원센터 설치·운영
- '08.1월 중기지원체제 일원화를 신정부 국정과제로 채택
 - * VIP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08.5.16) 및 정부 방침 확정통보('09.5.30)에 따라 해외 마케팅 지원활동을 KOTRA로 일원화
- '08.4월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글로벌 전문인력 유치 지원 기능 수행을 위해 KOTRA 內 「Contact KOREA」 설치·운영 방안 확정
 - * '08.9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 개소
- '09년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대통령 훈령('09.10.1)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설치('09.10.15)
- '11년 국가브랜드, 국제개발협력, 자원 및 에너지개발, 방산물자교역지원 기능 법제화('11.3.30)
- '14년 해외전문인력유치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업무 법제화('14.1.21)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2,486	2,160	2,205	2,344	2,16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전용, 예비비 및 불용사유('13년)

- 불용(1,600백만원) : 국가재정 여건을 반영한 예산절감 1,600백만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2,486 (-)	- (-)	- (-)	2,486 (-)	2,470 (-)	- (-)	1,600 (-)
'14년	2,160 (-)	- (-)	- (-)	2,160 (-)	2,160 (-)	- (-)	- (-)
'15년	2,205 (-)	- (-)	- (-)	2,205 (-)	2,205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13~'15)

연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3	신흥시장 조사 등을 위해 신흥국 무역관 인력 재조정 및 미얀마 등 신흥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흥국 무역관에 인력 보강 및 재조정 완료 ▪ 신흥시장 진출 위한 정보조사 인프라 확대 ▪ 신흥시장 정보 DB 확충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인재 채용 확대 및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인재 채용우대 강화 ▪ KOTRA 지방지원단을 통한 지방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사업 확대 ▪ 지방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방 중견기업의 월드클래스 성장 지원
2014	현재 지방지원단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원단 확대를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지원단 확대를 위한 對 정부(기재부, 중기청) 건의
	중소기업의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업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해외동반 진출 지원을 강화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회 해외동반 진출 정책 설명회' 실시('14.11)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연계 유통분야 동반 진출사업 플랫폼 구축(홈쇼핑, 한류 등 4개 협업사업 실시)
	해외공공조달시장 진출 성과 제고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일괄 지원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체결국인 美·EU 등 주요 공공조달 시장 진출 강화를 위한 'FTA 활용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방안' 조사('14.12~'15.2) ▪ 해외공공조달시장 진출지원 네트워킹 행사 개최
2015	제조업 부문의 그린필드형 투자유치 강화 및 사후관리 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단 파견 사업을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 ▪ 신산업 제조부문 중심의 '중점산업 유치 지원반' 운영 ('16.4) ▪ 제조업 신고·도착실적 상시 점검으로 사후관리 체계 강화
	해외 조달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달 시장별 진출방안 마련 및 설명회·상담회 실시 ▪ 미·EU 정부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수행지역 확대 ▪ 주요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조사사업 강화
	지역산업 육성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방지원단, 수출지원데스크의 확대 설치 및 지방지원단 복원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해 KOTRA 지방지원단 4개소(경기, 인천, 울산, 전북) 추가 설치('16.2) ▪ 지방소재 수출지원데스크 및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는 현장 대응인력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공단 수출지원데스크 : 5명 * 지방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4명(부재지역)

○ 외부 평가 결과('10~'15)

연 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2010	우수	양호	-
2011	우수	우수	우수
2012	우수	우수	-
2013	우수	우수	-
2014	S	우수	우수
2015	S	우수	-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세계 각국은 정부보조금에 의한 무역·투자진흥기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 직접 보조금이 금지되어 있는 WTO 체제하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이들 기관을 통한 자국 기업의 수출투자유치 지원활동 확대 추세

< 주요국 무역진흥기관별 국내외 조직 및 인원 운영현황 >

구 분		일본(JETRO)	한국(KOTRA)	홍콩(HKTDC)
인원	명	1,735	1,512	1,100
예산	연간(억원)	5,006	3,849	4,070
	1인당(억원)	2.88	2.55	3.70

(5)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예산 편성(11~12월) → 사업집행(연중) → 사업종료 후 결산(차년도 1분기) → 경영평가(차년도 1분기) → 국회 결산심사 및 확정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중소중견기업수출경쟁력강화 (재량, 계속, 국정과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중소중견기업수출경쟁력강화	54,287	52,629	23,500	△29,129	△55.3

* 사업코드 : 21 - 11 - 0 - 113 - 1100 - 1137 - 305

* 담당자 : 무역정책관(박진규), 무역진흥과과장(박덕열, 044-203-4030), 사무관(전용옥, 044-203-403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4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보조, 출연
사업시행주체	민간보조(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출연(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수행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기업 경쟁력 제고
 - 해외전시회 지원 :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한 국내기업의 수출계약 창출
 - 경제사절단 파견 및 상시비즈니스 지원 : 중소기업의 경제외교 활용 확산 및 지속적 성과창출을 위하여 1:1상담회, 네트워킹세미나 등 개최
 - 해외전문가 활용 기술컨설팅 지원 :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해외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컨설팅 지원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해외전시회 지원 : 16,900백만원

- (사업개요)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국내기업의 수출계약 창출
 -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 해외 개최 유망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는 단체참가 지원 [마케팅 및 행정서비스(임차, 장치, 운송 등) 지원]
 - *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 전시회 참가 직접경비의 일부 지원
- (산출내역) 지원기업 2,560개사 × 6.6백만원

② 경제사절단 파견 및 상시비즈니스 지원 : 4,500백만원

-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경제외교 활용 확산 및 지속적 성과 창출을 위하여 1:1상담회, 네트워킹세미나 등 개최
- (산출내역) 4,500백만원

③ 글로벌기술컨설팅 : 2,100백만원

- (사업개요)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외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컨설팅 지원
- (산출내역) 105개사 × 2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새로운 성장동력인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 고용창출 등 지속적인 국가 경제성장을 도모
- 중소·중견기업의 새로운 수출 동력화 및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통해 수출경쟁력 제고

< 세 부 내 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중소중견기업수출 경쟁력강화	54,294	52,629	23,500	△29,129	△55.3
▪ 지사화 사업	13,188	15,180	-	△15,180	-
▪ 해외전시회	19,453 (단체) 16,833 (개별) 2,620	21,949 (단체) 19,349 (개별) 2,600	16,900 (단체) 16,900	△5,049	△23.0
▪ 중견기업 글로벌기업 육성	10,386	9,000	-	△9,000	-
▪ 글로벌마케팅인턴	1,800	-	-	-	-
▪ 전시회연계 비즈니스 실무자육성	3,000	-	-	-	-
▪ 경제사절단 파견 및 상시비즈니스 지원	2,700	3,500	4,500	1,000	28.5
▪ 글로벌기술컨설팅	-	3,000	2,100	△900	△30.0
□ 비목(합계)	54,294	52,629	23,500	△29,129	△55.3
○ 민간경상보조(320-01)	54,294	49,629	21,400	△28,229	△56.9
○ 출연금(350-01)	-	3,000	2,100	△900	△30.0

* 중견기업글로벌기업육성, 지사화사업, 해외전시회(개별) 등은 '17년 신규 세부사업인 '수출
지원기반활용'으로 이관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수출유망기업 글로벌기업 육성
- 새로운 글로벌 시장 개척 : 신성장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신시장 개척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사화사업 : 152, ▪ 해외전시회지원 : 219, ▪ 중견기업글로벌육성사업 : 90 ▪ 경제사절단파견 및 상시비즈니스지원 : 35, ▪ 해외전문가 기술컨설팅 : 30
'17	2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사화사업 : 0, ▪ 해외전시회 지원 : 169, ▪ 중견기업글로벌육성사업 : 0 ▪ 경제사절단파견 및 상시비즈니스 지원 : 45, ▪ 해외전문가 기술컨설팅 : 21
'18	4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사화사업 : 159, ▪ 해외전시회지원 : 219, ▪ 중견기업글로벌육성사업 : 90 ▪ 경제사절단파견 및 상시비즈니스지원 : 35, ▪ 해외전문가 기술컨설팅 : 30
'19	4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사화사업 : 159, ▪ 해외전시회지원 : 218, ▪ 중견기업글로벌육성사업 : 90 ▪ 경제사절단파견 및 상시비즈니스지원 : 35, ▪ 해외전문가 기술컨설팅 : 30
'20	4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사화사업 : 159, ▪ 해외전시회지원 : 181, ▪ 중견기업글로벌육성사업 : 90 ▪ 경제사절단파견 및 상시비즈니스지원 : 27, ▪ 해외전문가 기술컨설팅 : 23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법률 제1059호, '62.4.24 제정)
 - * '95.8.4 개정(투자업무 추가), '03.9.29 개정(무역투자인력양성 기능추가)
 - 대외무역법 제4조 : 무역의 진흥을 위한 물품 등의 수출입 지원
 1. 무역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연수, 상담 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
 2. 무역전시장이나 무역연수원 등의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대외무역법 제8조 :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

○ 추진경위

- '14년부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산에서 국정과제로 분리 관리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강화	-	406	543	526	23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불용사유('15년)

- 불용(7백만원) : '15년 수시배정사업(전시회연계 비즈니스 실무자육성)
예산 교부시 7백만원 감액 조정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 (-)	- (-)	- (-)	- (-)	- (-)	- (-)	- (-)
'14년	406 (-)	- (-)	- (-)	406 (-)	406 (-)	- (-)	- (-)
'15년	543 (-)	- (-)	- (-)	543 (-)	543 (-)	- (-)	0.07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13~'15)

연 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3	해외전시회 사업의 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 거점무역관 운영 확대 전시회 참가기업 고객만족도 제고 활동 강화
2014	해외전시회 참가시, 유관기관이 각각 한국관을 구성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일원화하는 방안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전시회 운영협의회(중기중앙회, 중기청 등)를 통해 동일 전시회에 한국관 중복 참가 방지 ('14.12월) 개별 지자체의 한국관 참가 통합 지원 ('14.2월)
2015	지사화사업 실적 성과지표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전담직원 업무부담 경감 및 전문성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사화사업 실적 성과지표 산정기준 개선안 마련('15.12) → 관세청 수출통계 및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철저한 실적 검증 전담직원 확충 및 1인당 지원기업수 축소('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지원기업수 : ('15) 6.67개사 → ('16) 6.00개사 전담직원 산업별 직무교육 실시('15.9, '16.5)

○ 외부 평가 결과('10~'15)

연 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2010	우수	양호	-
2011	우수	우수	우수
2012	우수	우수	-
2013	우수	우수	-
2014	S	우수	우수
2015	S	우수	-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예산 편성(11~12월) → 사업집행(연중) → 사업종료 후 결산(차년도 1분기) → 경영평가(차년도 1분기) → 국회 결산심사 및 확정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수출지원기반활용 (신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수출지원기반활용	-	-	63,815	63,815	순증

* 사업코드 : 21 - 11 - 0 - 113 - 1100 - 1137 - 30

* 담당자 : 무역정책관(박진규), 무역진흥과장(박덕열, 044-203-4030), 사무관(전용옥, 403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7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에게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기업이 수출지원사업을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의 사업 도입

* 선정된 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에는 지원한도, 복수 지원항목, 복수 공급기관을 명시

- 바우처 부여대상 수출초보, 유망기업, 중견기업을 선정, 바우처 보유기업에게 수출지원사업 선택권을 부여하고 정부예산으로 소요비용 정산

- 지사화 서비스, 해외전시회 지원 등 해외마케팅 특화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수출실적 창출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통합지원사업

○ 수출바우처 사업 : 27,800백만원

-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에게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기업이 수출지원사업을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의 사업 도입
 - * 선정한 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에는 지원한도, 복수 지원항목, 복수 공급기관을 명시
- (지원사항) 바우처 부여대상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 보유기업에게 수출지원사업 선택권을 부여하고 예산으로 소요비용을 정산
- (산출내역) 27,800백만원
 - 내수기업 1,500백만원, 중견기업(월드챔프) 14,000백만원, 소비재기업 1,500백만원, 해외전시회(개별참가) 10,000백만원, 수출바우처 관리 시스템 구축 800백만원

② 개별지원사업

○ 지사화사업 : 30,015백만원

- (사업개요) KOTRA 해외무역관, 해외민간네트워크, OKTA 등이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 수행
 - * 중기청 '해외민간네트워크'('16년 54억원), OKTA '해외마케터사업'('16년 7억원)을 '17년부터 동 사업으로 이관
- (지원사항) 기업의 해외진출 수요에 따라 지사화 사업, 해외민간네트워크, OKTA 해외 마케터사업 등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 (산출내역) 30,015백만원
 - 지사화 사업 : 4,000개사 × 6.3백만원 = 25,315백만원
 - OKTA 해외마케터 : 600개사 × 1.17백만원 = 700백만원
 - 해외민간네트워크 : 200개사 × 20백만원 = 4,000백만원

○ 해외전시회 지원(단체참가) : 6,000백만원

- (사업개요) 해외 전문전시회 한국관 단체참가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실적 창출 지원

- (지원사항) 바우처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이 원하는 해외 유망 전시회를 선택하여 단체관 참가 지원 [마케팅 및 행정서비스(임차, 장치, 운송 등) 지원]

*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 전시회 참가 직접경비 지원

* 선정된 기업은 연간 한도(2회)내에서 지원대상 전시회 중 원하는 전시회 자율 선택

- (산출내역) 6,000백만원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 952개사 × 6.3백만원 = 6,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중소·중견기업에게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기업이 수출지원사업을 선택하는 ‘바우처’ 형태의 사업 추진

○ 지사화 서비스, 해외전시회 지원 등 해외마케팅 특화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수출실적 창출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수출지원기반활용	-	-	63,815	63,815	순증
▪ 통합지원사업	-	-	27,800 (내수기업 1,500, 중견기업 14,000, 소비재기업 1,500, 전시회(개별) 10,000, 관리시스템 800)	27,800	순증
▪ 개별지원사업	-	-	36,015 (지사화서비스 30,015, 전시회(단체) 6,000)	36,015	순증
□ 비목(합계)	-	-	63,815	63,815	순증
○ 민간경상보조(320-01)	-	-	63,815	63,815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2017년 신규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
 - 대외무역법 제4조, 제8조
- 추진경위
 - 중소중견기업수출경쟁력강화사업 등에서 바우처 형태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이관받아 신규예산 편성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수출지원기반활용	-	-	-	-	63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 (-)	- (-)	- (-)	- (-)	- (-)	- (-)	- (-)
'14년	- (-)	- (-)	- (-)	- (-)	- (-)	- (-)	- (-)
'15년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예산 편성(11~12월) → 사업집행(연중) → 사업종료
후 결산(차년도 1분기) → 경영평가(차년도 1분기) → 국회 결산심사 및 확정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무역보험기금출연 (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무역보험기금출연	145,000	30,000	-	△30,000	△100.0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3 - 1100 - 1138 - 881

* 담당자 : 무역정책국장(박진규), 수출입과장(이민우, 044-203-4040), 사무관(사웅제, 404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69년 ~ 현재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168조원('15년말 무역보험 지원규모)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무역보험공사

2. 사업목적

☐ 무역보험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

-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금융) 지원 및 플랜트 등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지원,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금 출연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해당사항 없음

□ 지원 필요성

- 新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수출부진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무역보험·무역금융을 통한 수출안전망 구축 필요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및 수출 中企의 글로벌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中企 무역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할 필요
 -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전체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 비중은 3% 미만으로 주요 선진국의 수출 중소기업 비중 평균 10% 이상 대비 저조
 - * (수출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화) 우리나라 수출업체수의 99%를 차지하는 수출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대외여건에 대응력 취약
- 발전·플랜트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는 수출자(시공사)의 금융조달력이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
- 무보는 보증을 통한 무역금융 지원으로 금융기관의 자금공여에 확실한 담보장치를 제공하며 수출자의 자금조달에 큰 기여
- 글로벌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무역보험지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누적으로 기금배수가 급등하여 기금건전성 악화
 - * 기금배수(배) : ('07) 27.4 → ('09) 50.7 → ('11) 90.3 → ('13) 86.6 → ('15) 66.3
 - * 기금배수 17년까지 50~60배 수준으로 하향조정 (정책금융역할재정립, '13.8월)
- 무역보험 지원확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수출기업의 수주경쟁력 저하가 우려되어 기금확충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무역보험기금출연	145,000	30,000	-	△30,000	△100.0
▪ 무역보험기금출연 (산출근거)	145,000	30,000 (중소중견기업무역보험지원 강화에 따른 손실보전)	-	△30,000	△100.0
□ 비목	145,000	30,000	-	△30,000	△100.0
○ 금융성기금출연금(350-03)	145,000	30,000	-	△30,000	△10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중소기업의 부족한 담보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환경을 조성하여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
- 리스크관리 강화 및 기금출연 확대를 통해 기금배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기금의 대외신인도 향상에 주력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300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및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무역보험기금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 출연
'17	-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및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무역보험기금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 출연
'18	800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및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무역보험기금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 출연
'19	700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및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무역보험기금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 출연
'20	600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및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무역보험기금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 출연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무역보험법 제30조 및 제31조
 - 제30조(기금의 설치) :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설치
 - 제31조(기금의 조성) :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

○ 추진경위

- (1968년) 수출보험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수출지원 수단으로써 수출보험제도를 적극 활용
- (1992.7월) 수출보험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전담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운영
- (2010.7월) 수출보험법→무역보험법으로 개정, 한국수출보험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무역보험기금출연	2,500	1,400	1,450	300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기관명	시기	지적·평가내용
기획재정부	'16년	'15년 기금운용평가 보통
기획재정부	'15년	'14년 기금준치평가 : 준치 필요성 인정
기획재정부	'15년	'14년 기금운용평가 양호
기획재정부	'14년	'13년 기금운용평가 우수
기획재정부	'13년	'13년 기금준치평가 : 준치 필요성 인정
기획재정부	'13년	'12년 재정사업자율평가 보통
기획재정부	'13년	'12년 기금운용평가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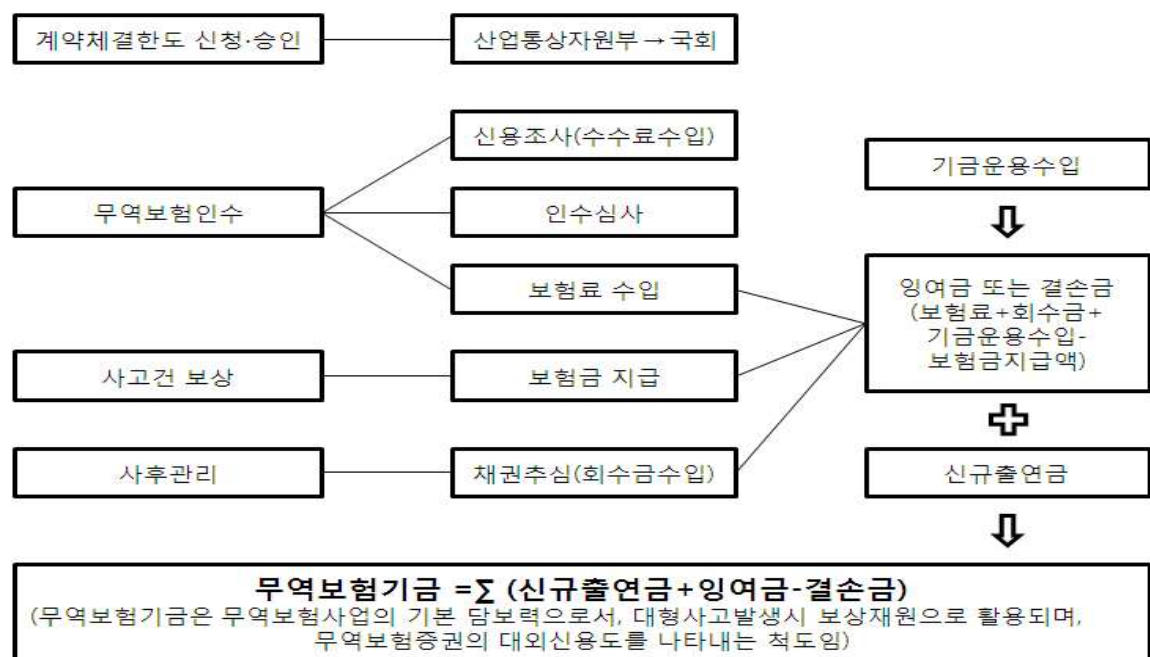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수출입 및 금융 산업이 발전한 선진국일수록 활성화되어 있으며, 현재 66개국 77개 기관에서 운영

- 운영방식은 국가별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이 자국기업의 무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최종 지급책임을 지는 정책 사업으로 운영

정부부처 형태로 운영	영국, 스위스, 뉴질랜드
전담 공기업 운영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홍콩 등 다수국가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별첨: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의 종류는 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5조의2(보험금 등의 지급) 공사는 보험사고 또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나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에 따라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3(보험대위 등) ①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목적 또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②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 무역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체결한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무역보험계약 체결(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계약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소재신뢰성보험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한도를 정한다. 다만,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中長期延拂)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의 범위에서 그 한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의 설치)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3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기관에 예입(預入)
2. 국채·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과 보험료·회수금·이자,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공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보험금·이자 및 공사의 운영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3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을 결산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모두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填)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제53조(업무) ① 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2.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수출(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대외채권에 대한 추심(推尋) 업무를 그 수출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적용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과 제2항에 따른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의 운영에 관하여는 무역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생활산업경쟁력강화 (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생활산업경쟁력강화	4,840	4,873	4,895	22	0.5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500 - 3535 - 305

* 담당자 : 무역정책관(박진규), 무역협력과장(이원희, 044-203-4840), 사무관(조우신, 484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2~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50:50, 정액), 출연
사업시행주체	지자체(전라북도(익산시), 경기도(포천시)), 한국디자인진흥원

2. 사업목적

- 생활산업은 IT·콘텐츠·디자인 등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용이한 산업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

* 부가가치율 : 생활산업 40.6%, 제조업 평균 32.0%('13년, 산업연구원)

- 이에 주얼리, 가구 등에 대한 산업 활성화 기반·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글로벌 생활명품 발굴·육성, 체계적 통계조사 등을 통해 생활산업의 고도화를 지원
- 전자·자동차 등 글로벌경쟁이 치열한 특정업종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다각화하여, 생활산업을 새로운 성장모멘텀으로 활용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귀금속보석산업클러스터조성 : 2,000백만원

- 익산시(전북도)에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아파트형표준공장, 디자인기술지원센터)을 위한 건축공사비 : 2,000백만원

② 가구유통판매시설지원 : 2,300백만원

- 국내 가구산업의 중심인 경기도(58%) 지역 내 가구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구센터 건립을 지원 : 2,300백만원

③ 소비재산업 수출기반구축 : 595백만원

- (글로벌생활명품 발굴·심사) 생활명품 발굴 전문가팀 운영 및 선정 평가, 홍보 : 100백만원
- (글로벌 생활용품 맞춤형 수출지원) 글로벌 생활명품 선정기업의 수출 컨설팅·마케팅샘플 제작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 : 295백만원
- (브랜드 제고형 소비자마케팅) 해외 주요 이벤트와 연계하여, 생활 소비재 기업이 참여하는 단기성 소비자 체험형 해외매장(팝업스토어) 운영 : 100백만원
- (통계기반 구축 및 업종별 협의체 운영) 생활산업 프리미엄화를 위하여 정책수요 발굴·과제 도출을 위한 체계적 통계기반 구축 및 업종별 협의체 운영 : 1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고급제품 수요증가 등으로 생활산업의 시장규모는 확대된 반면, 급격한 수입증가로 무역수지는 악화, 세계시장 점유율도 하락

- * '12년 국내시장규모 49조원('03년 대비 1.8배 증가, 10년간 연평균증가율 7%)
- * 최근 10년간 연평균증가율('05~'14년) : (수입액) 11.4%, (수출액) 7.8%
- * 05년 무역수지 적자전환 후 적자폭 확대 : ('05) 2.5억달러 → ('14) 47.7억달러
- *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 '03→'12) : (한국) 2.3 → 1.2, (중국) 22.0 → 41.5

- 생활산업은 IT·컨텐츠·디자인 등과의 융합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

- * 부가가치율 : 생활산업 40.6%, 제조업 평균 32.0%('13년, 산업연구원)
- * 고용창출효과 : 생활산업 14.3명 vs 제조업 평균 5.6명(13년, 산업연구원)

- 그러나 생활산업 기업의 상당수가 영세기업으로, 디자인·R&D 등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및 제품혁신을 위한 관심·투자 등이 저조

- 정부 또한 생활산업이 성숙산업이라는 인식으로 체계적 정책지원이 미흡,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업종별 실태자료 등의 확보도 부족

⇒ 유망기업·제품 등에 대한 집중·종합 지원을 통해 선도적 사례(Best Practice)의 창출·확산하고, 생활산업에 대한 비전 확보

⇒ 한편, 생활산업의 집적화 유도 및 기업의 공동활용기반 등을 구축하여 산업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생활산업경쟁력강화	4,840	4,873	4,895	22	0.5
▪ 가구유통판매시설지원	100	1,300 (7,400×35.1%(공정율)× 50%(보조율))	2,300 (7,400×62.2%(공정율)× 50%(보조율))	1,000	76.9
▪ 귀금속보석산업고도화육성	3,000	3,373	2,000	△1,373	△40.7
(귀금속보석산업클러스터)	3,000	2,626 19,300×19.2%(공정율)× 71%(보조율)	2,000 19,300×14.6%(공정율)× 71%(보조율)	△626	△23.8
(주얼리U턴기업 집적산업센터)	-	747 12,100×12.34%(공정율)×50% (보조율)	-	-	-
▪ 안경토탈비즈니스센터구축	1,000	-	-	-	-
▪ 한·한강산업자원센터건설및개편	500	-	-	-	-
▪ 소비재산업수출기반구축	240	200 (글로벌생활명품 발굴·심사 통계기반구축 및 업종별 협의 체 운영)(통계조사 및 협의체 운영50))	595 (글로벌생활명품 발굴·심사 100, 글로벌생활명품 맞춤형 수출지원 295, 브랜드 제고형 소비자마케팅 100, 통계기반 구축 및 업종별 협의체 운영 100)	395	197.5
☐ 비목(합계)	4,840	4,873	4,895	22	0.5
○ 자치단체 보조(330-03)	4,600	4,673	4,300	△373	△8
○ 출연(350-01)	240	200	595	395	197.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디자인·IT·콘텐츠 등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생활산업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내수시장에서의 위상제고 및 수출산업화 추진
- (성장전략 확산) 생활산업을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활산업 비전을 수립하고, 고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기업 혁신역량 강화) 성공가능한 유망제품·기업을 발굴하여 디자인, R&D, 마케팅 등을 맞춤형 지원, 글로벌명품으로 육성
- (산업기반 구축) 업종별·업종간 네트워킹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 기업·산업의 자생력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48.73	▪ 귀금속보석산업고도화 33.73, 가구유통판매시설지원 13, 생활산업지식기반구축 2
'17	48.95	▪ 가구유통판매시설지원 23, 귀금속보석산업클러스터조성 20, 소비재산업수출기반구축 5.95
'18	22.25	▪ 소비재산업수출기반구축 15, 생활산업융합얼라이언스 7.5
'19	20.69	▪ 소비재산업수출기반구축 15, 생활산업융합얼라이언스 5.69
'20	19.10	▪ 소비재산업수출기반구축 15, 생활산업융합얼라이언스 4.1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발전법 제6조(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제11조(기업 간 협력의 촉진)
- 산업융합촉진법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제20조(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진흥원의 사업)
- 140대 국정과제의 일환 (6. 협력적 기업생태계조성 - 투자유치·U턴기업 지원)

○ 추진경위

- '10. 9월 : '숙련집약형 패션산업 육성방안' 위기관리대책회의 의결
- '10.12월 : '숙련집약형 패션산업 육성방안' 장관간담회 및 발표
- '13. 1월 : '전통수공업의 신산업화를 위한 전략' 수립
- '13.11월 : '디자인 등을 활용한 생활산업 고부가가치화 방안 연구' 정책 연구용역(산업연구원)
- '13.12월~ : '글로벌 생활명품 육성 프로젝트' 추진
 - * '14년 10개, '15년 30개 기선정 ('17년까지 100대 글로벌생활명품 발굴육성)
- '14. 10월 : '생활산업 고도화 대책' 발표
- '16. 3월 : '소비재 수출활성화 대책' 발표(관계부처합동)
- '16. 7월 : '생활산업 프리미엄화 대책' 발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생활산업경쟁력 강화	163	116.95	49.40	48.73	48.9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육성 사업 5억원 불용('13년)
 - 익산시(전라북도)의 지방비 미확보('13년 12월, 14억중 5억 확보)로 집행금액을 5억으로 하향 조정
-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육성 사업 9.08억원 불용('14년)
 - 세수부족 및 공사일정 지연 등을 반영하여 9.08억원 미집행
- 가구유통판매시설 지원사업 1억원 불용('15년)
 - 고양시(경기도)의 사업부지 확보 제한 등으로 1억원 미집행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163 (163)	0 ()	0 ()	163 (163)	158 (3.42)	0 ()	5 (0)
'14년	116.95 (116.95)	0 ()	0 ()	116.95 (116.95)	107.87 (41.24)	0 ()	9.08 (0)
'15년	49.4 (49.4)	0 ()	0 ()	49.4 (49.4)	48.4 (7.4)	0 ()	1 (0)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실집행 부진 반복('15년 산업위 결산국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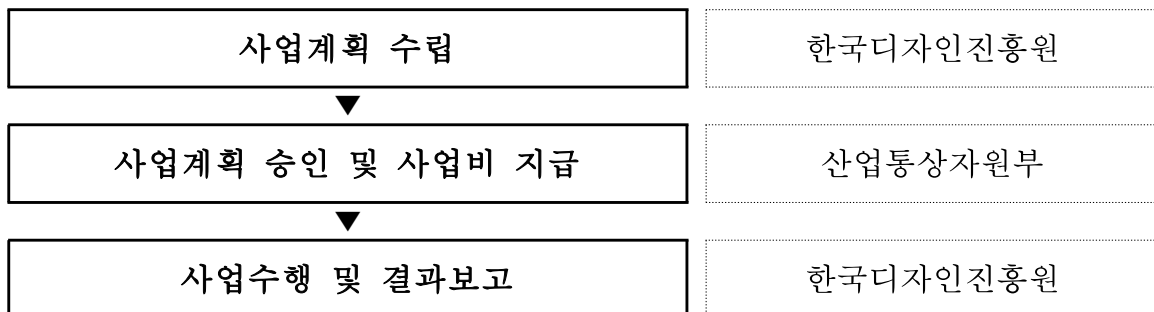
국가	사 례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하는 ‘유연 전문화’ 생산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 ’70년대 경제적 요동이 증가하고 수요의 가변성이 확대 - 목적 : 전문성을 보유한 중소기업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유연성 있는 전문화 생산(Flexible Specialization)” 추구 - 특징 :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전체 공정과정을 묶어, 제품을 기획하고 최종 생산까지 담당하는 ‘오가나이저(organizer)’ 기업 중심으로 촘촘한 네트워크 형성·협력체계 구축 - 성과 :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생활산업(가방, 안경, 의류 등) 등 명품 생산에 특화 되어, Made in Italy 브랜드 가치 급상승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산업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 ’90년초 인건비·운영비 상승, 용지·기술자 부족 등으로 위기 - 목적 : 가구 수출 인프라 확대 - 특징 : ’07년 가구테마공원(IFP) 조성, 단지 내에 가구수출지원센터(IFC)를 설립하여 가구전시, 문의 및 상담, 계약 등이 ‘one-stop’ 서비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민간의 적극적 참여로 비즈니스 시너지 창출에 성공 - 성과 : ’14 싱가포르 국제가구박람회 33개국 418업체 참여, 방문객 22,496명 기록, 현장 판매계약 약 4억8천만 싱가포르 달러(약 4,000억원) 및 약 59억 싱가포르 달러(약 5조원) 후속 거래 체결 예상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특화단지 조성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 내수수요 감소와 해외시장 경쟁력 약화 가구시장 침체 - 목적 : 일본무역진흥기구 주도로 자동차, 전자제품, 등으로 세계에 알려진 일본의 높은 기술력을 가구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유관 분야 네트워킹 서비스와 전문가 지원 - 특징 : 브랜드 신규개발 후속 조치의 부재*로 의도한 목표 달성 실패 <p>* Akio Imamura는 팀 오카와 중심의 산·민·관·학 협력 프로젝트를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의 부재로 인한 제품 이미지 구축 실패로 규정</p>

(5) 사업추진절차

< 귀금속보석산업고도화, 가구유통판매시설 지원 >

예산교부절차	일반적 사업수행절차
<div>예산교부신청</div> <div>↓</div> <div>예산교부신청,검토</div> <div>↓</div> <div>예산교부결정</div> <div>↓</div> <div>예산교부</div> <div>↓</div> <div>예산집행</div> <div>↓</div> <div>예산집행보고</div>	<div>사업추진</div> <div>↓</div> <div>사업추진실적보고</div> <div>↓</div> <div>사업일정보고/검토</div> <div>※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시 협의</div>

< 소비재산업수출기반구축 >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투자정책관

투자정책관

(백만원, %)

사업명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 해외진출기반구축	2,460	2,172	1,675	△ 497	△ 22.9
소계	2,460	2,172	1,675	△ 497	△ 22.9
<지특회계>					
○ 투자유치기반조성	105,676	58,895	52,769	△ 6,126	△ 10.4
소계	105,676	58,895	52,769	△ 6,126	△ 10.4
총계	108,136	61,067	54,444	△ 6,623	△ 10.8

해외진출기반구축사업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해외진출기반구축사업	2,460	2,172	1,675	△ 497	△ 22.9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3 - 1900 - 1933 - 301

* 담당자 : 투자정책관(박성택), 해외투자과장(전병근, 044-203-4090), 주무관(정해윤, 044-203-409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6-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100%)
사업시행주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사업목적

- 해외투자진출 역량이 취약한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성공적 해외 투자 및 현지 정착을 위한 해외투자 지원 환경기반 조성·지원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해외진출기업 지원

- (예산내용) 해외투자진출 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투자 상담·컨설팅 제공 및 현지 법률·세무·노무 등 해외진출 애로해소를 지원하여 성공적 현지정착 및 내수시장 개척 지원
- (산출근거)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비 744백만원(12개소x62백만원) + 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콘텐츠 확보 및 운영관리 인건비 등) 124백만원 + 글로벌기업 연계 해외진출지원(기업발굴, 국내 행사 개최, 현지 창업지원 등) 120백만원 + 기타 해외진출지원(국내 해외투자상담 센터 운영, 해외진출 지원기관 간 협력 강화 등) 91백만원

② 중소기업 해외 M&A 지원

- (예산내용) 중소기업이 해외 우수 기업에 대한 M&A를 통해 선진 경영자원(기술, 고객망, 브랜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기업에 대한 M&A에 대한 정보제공 및 M&A딜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 (산출근거) 금융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딜 소싱(매물·매도 기업 발굴, 포럼·간담회 개최, M&A 정보망 구독 등) 290백만원 + 국내 기업 실사비용 지원(12개사, 1개사 최대 2천만원 지원) 240백만원 + 운영비 66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증가 및 FTA 체결 확대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 투자·경영 정보, 네트워크 구축 지원, 현지 애로 해소 지원 등에 대한 수요 증가
- 특히, 중국 등 주요 투자진출국의 투자여건 변화(임금상승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신흥 투자유망국에 대한 적시 지원 필요
- 해외 M&A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과 지원 수요는 많으나, 시장에서는 소규모 M&A딜을 기피하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수
- 해외 M&A 지원 성공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중**

* 국정과제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글로벌역량 강화

** VIP 말씀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적극지원”(해외진출성과확산 토론회('14.12월), 중기간담회('13.12월))

< 세 부 내 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해외진출기반구축	2,460	2,172	1,675	△497	△ 22.9
<div> <div>■ 해외진출기업지원</div> </div>	1,660	1,400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960백만원 (12개 센터 * 80백만원) ·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 운영 160백만원 ·기타 해외진출지원 280백만원	1,079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744백만원(12개 센터 * 62백만원) ·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 운영 124백만원 ·기타 해외진출지원 211백만원	△ 321	△ 22.9
<div> <div>■ 중소기업 해외 M&A 지원</div> </div>	800	772 ·금융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딜 소싱 440백만원 ·국내기업 실사비용 지원 250백만원 (10개사 * 25백만원) ·운영비 82백만원	596 ·금융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딜 소싱 290백만원 ·국내기업 실사비용 지원 240백만원(12개사 * 2천만원) ·운영비 66백만원	△ 176	△ 22.8
☐ 해외진출기반구축(합계)	2,460	2,172	1,675	△497	△ 22.9
○ 민간경상보조(320-01)	2,460	2,172	1,675	△497	△ 22.9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해외투자진출 역량이 취약한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성공적 해외 투자 및 현지 정착을 위한 해외투자 지원 환경기반 조성·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21.72	▪ 해외진출기업 지원(14.0), 중소기업 해외 M&A지원(7.72)
'17	16.75	▪ 해외진출기업 지원(10.79), 중소기업 해외 M&A지원(5.96)
'18	20.16	▪ 해외진출기업 지원(12.9), 중소기업 해외 M&A지원(7.26)
'19	20.04	▪ 해외진출기업 지원(12.83), 중소기업 해외 M&A지원(7.21)
'20	19.94	▪ 해외진출기업 지원(12.76), 중소기업 해외 M&A지원(7.18)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대외무역법 제7조, 8조 : 해외진출기업 지원,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KOTRA에 해외진출지원센터 설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제6항 :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3조: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

○ 추진경위

- '07.2.28 : 범부처 차원의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발표
- '09.10월 : 대외무역법 시행(09.4월)에 따라 KOTRA에 해외진출지원센터 설립
- '12.12월 : 해외 M&A 활성화 대책 발표(대외경제장관회의)
- '14.1월 : 해외 기업협의체 활성화방안 발표(대외경제장관회의)
- '14.3월 : 글로벌 M&A센터 설립 1주년 성과보고대회 개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해외진출기반구축	25.55	25.55	24.6	21.72	16.7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25.55 (25.55)	- (-)	- (-)	25.55 (25.55)	25.55 (23.46)	- (-)	- (-)
'14년	25.55 (25.55)	- (-)	- (-)	25.55 (25.55)	25.55 (24.14)	- (-)	- (-)
'15년	24.6 (24.6)	- (-)	- (-)	24.6 (24.6)	24.6 (23.02)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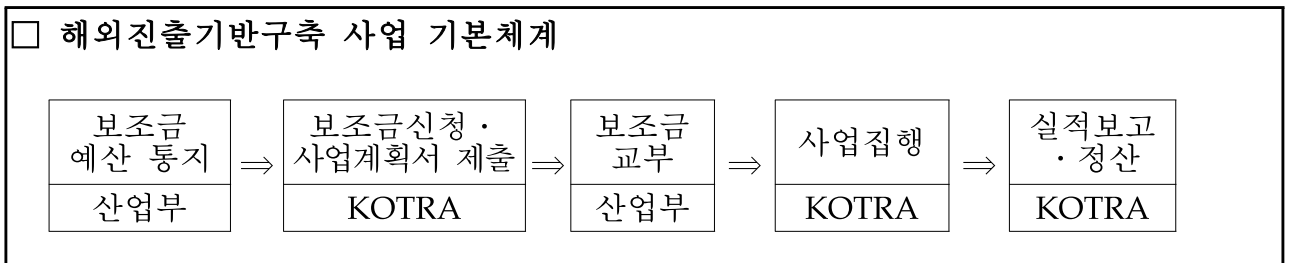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JETRO 및 JBIC의 해외투자기업 지원

- 전액 정부출자 특수법인인 일본무역진흥회(JETRO)를 통해 57개국 78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각 현지사무소 투자팀 지역전문가를 통한 현지 투자상담, 지역투자설명회 및 현지 투자리포트 발간 등의 사업진행
- 국제협력은행(JBIC)를 통해 해외 M&A 등 해외투자기업에 대해 10조엔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 (재량, 계속)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투자유치기반조성	105,676	58,895	52,769	△6,126	△10.4

* 사업코드 : 21 - 39 - 2 - 110 - 113 - 4900 - 4901 - 302

* 담당자 : 투자정책국장(박성택), 투자정책과장(김용채, 044-203-4070), 주무관(최성환, 044-203-407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4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자치단체보조(국:지=6:4, 수도권 3:7), 민간보조(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산업부, 코트라 등

2. 사업목적

-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기반 고도화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투자재원 확보, 첨단기술 도입, 수출증대 및 일자리 확보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① 토지매입비 :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가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 일정 비율로 토지(외국인투자지역) 매입 후 당해 기업에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투자유치 활성화(35,600백만원)

▪ 산출내역 :

- 기지정 5개 지역(송산2, 미음, 오성, 장안2, 천안5) × 40억원 = 20,000백만원
- 신규지정 2개 지역 = 15,600백만원

- ② **임대료지원** : 서비스형 외투지역에 입주한 외투기업 임대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0백만원

▪ 산출내역 : 3개소 × 50백만원 = 150백만원

* 임대료의 50%내에서 지방비 매칭(국 : 3, 지 : 7)하여 입지지원

- ③ **현금지원(Cash Grant)** : 고도기술 수반사업, 대규모 고용창출 사업 등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FDI 금액의 일정비율 지원(10,000백만원)

- 법적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 산출내역 : 既승인 2건 1,000백만원 + '17년 신규진행 3건 9,000백만원

< 지원대상 및 용도 >

- 지원대상 : 고도기술 수반사업, 부품소재, 대규모 고용창출사업, R&D 연구시설
- 지원용도 : 토지, 건물 매입비, 임대비, 건축비, 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 지원금액 : 협상을 통해 FDI 금액의 일정비율 지원

- ④ **투자유치활동비** : 외국인 투자주관 행사(FIW), 국내외 IR, 투자환경 개선 등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6,488백만원)

▪ 산출내역 : 투자유치 4개 분야 × 1,622백만원

< 투자유치 활동분야 >

- 유치활동 : 국내외 IR, 상품화, 프로젝트 점검 등
- 기반조성 : FIW, 포럼, 박람회, 설명회 등
- 환경개선 : 레드카펫서비스, 원스톱서비스, 고충처리활동 등
- 연구·조사 : 경영실태조사, 투자매력도조사 등

- ⑤ **국내복귀기업지원** : 유턴기업 선정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국내외 기업 대상 유턴 수요발굴, 합법적 현지 청산 등 지원 (300백만원)

- **국내 유턴기업지원센터(100백만원)** : 유턴기업 선정 및 사후관리, 해외진출기업 본사 설명회, 홍보책자 발간·배포, 실태조사 등

- 해외 유턴기업 지원데스크(200백만원) : 40백만원 × 5개 데스크

- * 현지 유턴 의향기업에 대한 상담 및 청산 컨설팅 비용 지원, 유턴기업 해외사업장 실사, 유턴 지원제도 설명회 등

⑥ 정책연구비 : 수요조사를 통해 활용도가 높고 정책연계 효과가 큰 과제를 선정해 투자정책 수립에 활용 (200백만원)

- 산출내역 : 4개 과제 × 50백만원

⑦ 국외여비 :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를 위해 美, EU, 일본, 중국, 중동 등 전략지역별로 맞춤형 IR 개최를 위한 국외여비 (31백만원)

- 산출내역 : 일본 2회(5백만원), 중화 2회(4백만원), 미국 2회(10백만원), 유럽 2회(12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외국인투자는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도기술 유입 및 약 15,000여개 외투기업이 고용창출 및 수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

- * 약 15,600여개 외투기업이 515,464명 고용 (이 중 제조업 고용은 276,302명)

- * 외투기업의 국민경제 비중은 총 수출의 20.2%, 총 부가가치의 10.5 %('13년)

- 유럽 재정위기 등 어려운 글로벌 경제여건 속에서 일자리 창출 및 혁신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양질의 FDI 유입 등 역할확대 필요

○ 국내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건설을 견인하는 양질의 FDI 유치 필요

- 시장확대, 관세인하 등 FTA 효과 및 국제 환경변화를 활용, 집중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를 통해 투자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

-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헤드쿼터,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유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 필요
 - * 고부가가치 투자유치를 통해 세계 10위권 투자강국으로 도약('15.3월 무투회의, '15.5월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14.1월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VIP보고)
- 그간 기본경비 예산부족으로 유치활동에 애로가 있었던 만큼, 별도 예산배정을 통해 적극적인 유치활동 지원 필요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유턴 유치활동 전개필요

< 세 부 내 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 투자유치기반조성	105,676	58,895	52,769	△ 6,126	△ 10.4
▪ 토지매입비	94,925	33,598 (7개소×4,800백만)	35,600 (7개소×5,086백만)	2,002	6.0
▪ 임대료지원	-	400 (3개소×133백만)	150 (3개소×50백만)	△250	△62.5
▪ 현금지원	19,989	16,400 (6개사×2,733백만)	10,000 (5개사×2,000백만원)	△6,400	△39.0
▪ 투자유치활동비	8,944	7,479 (IR활동 3,338백만 + 기반조 성 2500백만 + 환경개선 1,000백만 + 연구조사 641백 만)	6,488 (4개분야 × 1,622백만)	△991	△13.3
▪ 국내복귀기업지원	729	729 (센터운영비 249백만) +해외 데스크 67개×80백만)	300 (센터운영비 100백만) +해외 데스크 5개×40백만)	△429	△58.8
▪ 정책연구비	480	250 (투자제도 133백만 + 투자환경 46백만 + 유치전략 71백만)	200 (4개과제 × 50백만)	△50	△20.0
▪ 국외여비	-	39 (중국 3회(4,522천원), 중동 2 회(10,020천원), 유럽 3회 (19,350천원), 일본 2회(5,108 천원))	31 (일본 2회(5,000천원), 중화 2회 (4,000천원), 미국 2회(10,000천원), 유럽 2회(12,000천원))	△8	△20.5
□ 투자유치기반조성(합계)	105,676	58,895	52,769	△ 6,126	△ 10.4
○ 국외여비(220-02)	-	39	31	△8	△20.5
○ 정책연구비(260-02)	480	250	200	△50	△20.0
○ 민간경상보조(320-01)	9,673	8,208	6,788	△1,420	△17.3
○ 민간자본보조(320-07)	19,989	16,400	10,000	△6,400	△39.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400	150	△250	△62.5
○ 토지매입비(410-00)	94,925	33,598	35,600	2,002	6.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고도기술 수반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적 프로젝트 유치 확대
- 선진국과 신흥자본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추진
- 외투기업의 애로해소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환경 개선
- 현금지원 활성화를 통한 전략적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58,8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매입비(33,598백만원), 현금지원(16,400백만원). 임대료지원(400백만원) ▪ 투자유치활동비(7,479백만원), 연구용역비(250백만원) ▪ 국내 복귀기업지원(729백만원), 국외여비(39백만원)
'17	6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매입비(34,703백만원), 현금지원(16,400백만원). 임대료지원(400백만원) ▪ 투자유치활동비(7,479백만원), 연구용역비(250백만원) ▪ 국내 복귀기업지원(729백만원), 국외여비(39백만원)
'18	58,4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매입비(33,197백만원), 현금지원(16,400백만원). 임대료지원(400백만원) ▪ 투자유치활동비(7,479백만원), 연구용역비(250백만원) ▪ 국내 복귀기업지원(729백만원), 국외여비(39백만원)
'19	58,0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매입비(32,781백만원), 현금지원(16,400백만원). 임대료지원(400백만원) ▪ 투자유치활동비(7,479백만원), 연구용역비(250백만원) ▪ 국내 복귀기업지원(729백만원), 국외여비(39백만원)
'20	55,7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매입비(30,458백만원), 현금지원(16,400백만원). 임대료지원(400백만원) ▪ 투자유치활동비(7,479백만원), 연구용역비(250백만원) ▪ 국내 복귀기업지원(729백만원), 국외여비(39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3조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인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감면분)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 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94.01 :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 *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제도 도입(부지매입, 분양가차액지원 방식)
- '98.11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 * 외국인투자지역 제도 도입(부지매입 방식)
 - * 각종 지원제도 도입(분양가차액보조, 인프라설치지원, 고용 및 훈련보조)
- '03.09 : 「외국인투자종합대책」 수립(국무회의 보고)
- '03.12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 * 현금지원(Cash Grant)제도 도입, PM제도(Project manager) 도입
- '04.04 : 「지자체의 외투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 '05.01 :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 중 지자체 보조사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 회계」로 이관
- '09.05 : 외국인투자유치 사업(일반, 균특)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사업재편
- '09.09 : 사업명을 “외국인투자유치”에서 “투자유치기반조성”으로 변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투자유치기반조성	1,611	1,476	805	589	52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3년도

- 불용 : 부지매입비 608.7억원, 현금지원 1.2억원, 투자유치활동비 8.9억원, 외국인학교건립 22억원, 연구용역비 0.4억원
- 이월 : 부지매입비 192.7억, 현금지원 80.7억, 연구용역비 2.6억

○ '14년도

- 불용 : 부지매입비 455억원, 현금지원 75.9억원, 연구용역비 0.1억원
- 이월 : 부지매입비 400억원, 연구용역비 0.66억원

○ '15년도

- 불용 : 현금지원 149억원, 연구용역비 0.14억원

- 이월 : 연구용역비 0.16억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1,611 (1,611)	0.27 (0.27)	()	1,611 (1,611)	694 (694)	276 (276)	641 (641)
'14년	1,476 (1,476)	276 (276)	()	1,752 (1,752)	821 (821)	400 (400)	531 (531)
'15년	805 (805)	400 (400)	()	1,205 (1,205)	1,057 (1,057)	()	149 (149)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4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미흡

○ '15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미흡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항공우주산업, 대체에너지 개발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 美 연방 정부 차원에서 현금지원 인센티브 제공

○ (일본)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R&D 법인 유치를 위해 조사설계비, 시설공사비, 설비비, 임차료 등 보조금을 지원

○ (중국) 다국적기업이 설립한 헤드쿼터의 등록자본금이 1억 위안 이상일 경우 3년에 걸쳐 자본금액 규모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

(5) 사업추진절차

- 토지매입비
 - 외투자지역 지정 요청(지자체) → 외투자지역 지정 결정(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의결) → 토지매매계약(국가, 지자체, 소유주) → 부지매입비 예산지원(국비, 지방비)
- 현금지원
 - 현금지원 신청(외투기업) → 현금지원 결정(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의결) → 현금지원계약(국가, 지자체, 외투기업) → 현금지원 예산지원(국비, 지방비)
- 기반시설지원(제주)
 - 외국인투자 → 외투자지역지정 및 개발사업승인(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의결) → 대상검토 및 국비신청(지자체) → 예산지원(제주특별자치도) → 사후관리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통상국내대책관실

통상국내대책관실

(백만원, %)

사업명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통상협정국내대책 추진지원	10,292	13,282	13,550	268	2.0
소계	10,292	13,282	13,550	268	2.0
총계	10,292	13,282	13,550	268	2.0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10,292	13,282	13,550	268	2.0

* 사업코드 : 21-11-00-110-113-1900-1935-301

* 담당자 : 통상국내대책관(조영신), 총괄기획과장(정해권, 044-203-4120), 사무관(양해구, 044-203-412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06~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15년) 103억원, ('16년) 133억원
지원조건	직접수행(일부 민간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KOTRA, 무역협회 등

2. 사업목적

- 既 발효된 FTA에 대한 적극적 이행 및 활용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 FTA 전문인력 양성, 국내보완대책 사업 등을 추진 하여 FTA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
-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 전문가 컨설팅, 교육·설명회를 비롯하여 FTA 보완대책의 이행점검,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 수립

3. '17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 ('16) 8,932백만원 → ('17) 10,200백만원 >

① FTA 종합지원센터 지원 : ('16) 4,932 → ('17) 5,950백만원

㉔ FTA 현장 전담 컨설팅 : ('16) 1,500 → ('17) 1,900백만원

- (목적) 전문지식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FTA활용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 전담 컨설팅 제공
- (내용) 관세법인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품목분류,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등 해당기업의 FTA활용 전반을 컨설팅
- (지원범위) 중소기업의 FTA 활용수준, 수출품목을 고려하여 1개 기업당 최소 24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 지원(8~10MD)

<기업 자부담 비율>

직전년도 매출액	자부담 비율	직전년도 매출액	자부담 비율
20억원 이하	0%(무료)	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0%(40만원)
5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20%(80만원)	500억원 초과~1,500억원 이하	30%(120만원)
		1,500억원 초과	40%(160만원)

- (산출근거) 475개사 × 최대 4백만원(일 40만원, 용역비 기준 인건비)

㉕ 찾아가는 FTA 서비스 : ('16) 2,600 → ('17) 2,800백만원

- (목적) 기업이 밀집된 산업단지, 업종별 단체 등으로 FTA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신속하고 접근성 높은 컨설팅 실현
- (내용) 거점지역·단체로 배치된 관세사, 원산지관리사가 기본상담, 원산지증명서 발급, 교육 등을 실시
- (지원범위) 기업이 무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인력(관세사 47명, 원산지관리사 7명 등 총 54명)의 인건비 지원

▪ (산출근거)

(백만원)

구분	'16년 예산	'17년 요구	비고
주요 산단 및 지역센터	1,795 * 관세사 30명×50~55(1,580) * 원산지관리사 6명×35(210)	1,995 * 관세사 34명×50~55(1,785) * 원산지관리사 6명×35(210)	전년 대비 +200
FTA 종합지원센터	530 * 관세사 9명×50~55(495) * 원산지관리사 1명×35(35)	530 * 관세사 9명×50~55(495) * 원산지관리사 1명×35(35)	
업종별 단체* (섬유, 전자, 기계, 화학)	120 * 관세사 4명×30(120)	120 * 관세사 4명×30(120)	

구분	'16년 예산	'17년 요구	비고
합동행사 (워크샵 등)	155	155	
합 계	2,600	2,800	전년 대비 +200

㉔ 차이나데스크 운영 : ('16) 800 → ('17) 1,250백만원

- (목적) 우리기업의 한·중 FTA활용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및 전문가 합동의 원스톱 종합지원체계 구축
 - * 참여기관 : 무역협회, KOTRA, aT센터, 대한상의, KTR, 지식재산보호협회 등
- (내용) 관세사, 변호사, 인증전문가, 수출전문위원 등의 전문인력이 한·중 FTA 활용 상담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국 현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 (지원범위) 대중수출중소기업 대상, FTA미활용기업 우선지원
 - (산출근거)

(백만원)

구분	'16년 예산	'17년 요구	비고
전문가 배치 등 인건비	330 * 관세사 4명×55(220) * 변호사 및 인증전문가(55) *수출전문위원 2명(55)	680 * 관세사 4명×55(220) * 인증(원산지)전문가 11명×35(385) * 수출전문위원 3명(75)	전년 대비 +350
정보제공 및 컨설팅	320 * 현장컨설팅(240) * 전문가협의체(24) * 비즈니스모델 발굴(56)	290 * 현장컨설팅(240) * 한중FTA 용역(50)	전년 대비 △30
설명회 및 홍보	150 * 설명회 개최(30) * 현장 방문(30) * 차이나데스크 운영(10) * 한중FTA 홍보(80)	280 * 설명회 개최(130) * 한중FTA 홍보(150)	전년 대비 +130
합 계	800	1,250	전년 대비 +450

②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지원 : ('16) 2,100 → ('17) 2,500백만원

㉕ 지역기업 FTA 활용 촉진 : ('16) 1,700 → ('17) 2,000백만원

- (목적) 지방 중소기업의 FTA활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5개 시·도에 17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를 지정·운영

- * (운영기관) 상공회의소 10, 무역협회 2, 지역경제단체 2, 지자체 통상기관 3
- (내용) 중소기업의 FTA활용 수준 및 수요에 따라 기초상담-설명회-실무교육-컨설팅 등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실무 메뉴얼 제작·배부
- (지원범위) 지역 센터별 FTA활용지원 사업비 및 운영비
 - ('17년 산출근거) 17개 지역센터 × 0.8~1.5백만원
 - * 예산의 70%를 지역센터별 지원대상 기업 규모수에 따른 차등 지급(5등급), 나머지 30%는 사업실적(컨설팅, 교육, 설명회, 네트워킹), 홍보실적, 성공사례 등에 따라 차등 지급

④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 ('16) 400 → ('17) 500백만원

- (목적) 수출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부담 완화 지원
- (내용) 거래 당사자 이외의 제3의 기관(지역 FTA활용지원센터)이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확인하여 수출-협력기업간 신뢰성 제고
 - * 수출협력업체 ↔ 지역센터(제3자확인) → 최종수출자(원산지증명서발급) → 수입자
- (지원범위) 수출 2, 3차 협력업체의 원산지 관리 및 원산지 확인서 발급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관세사) 인건비 지원
 - (산출근거) 16개 지역센터 × 50~100백만원 × 0.5(지방비 매칭 50% 사업)
 - * 지역센터의 실적 및 성과사례를 분석하여 국고지원 비율을 차등화

③ FTA 해외 활용지원센터 : ('16) 1,500 → ('17) 1,500백만원

- (목적) FTA 신규 발효국 바이어 및 현지진출기업의 FTA 활용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애로해소를 지원하여 우리기업의 FTA 활용 효과 제고
 - * 중국(4), 베트남(2) 등 총 6개소 KOTRA 무역관 내 설치 운영중
- (내용) 마케팅사업과 연계한 설명회·홍보, 자문단을 통한 현지 기능별, 산업별 심층 상담·정보 제공,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 (지원범위) 센터 소재지 바이어 및 현지진출 우리기업

▪ ('17년 산출근거)

(백만원)

구분	'16년 예산	'17년 요구	비고
전담직원 인건비	444 * 9명×40~70	600 * 12명×40~70	전년 대비 +156
자문단운영비	72 * 6개소×12	90 * 9개소×10	+18
센터 홍보, 운영비	156 * 홍보비 6개소×10(60) * 운영비 6개소×16(96)	210 * 홍보비 9개소×5~10(60) * 운영비 9개소×15~20(150)	+54
개소식	126 * 베트남 2개소×63	150 * 신규센터 개소	+24
센터 사업비 (설명회, 이동데스크)	290 * 설명회 10회×23(230) * 이동데스크 6개소×10(60)	360 * 설명회 10회×30(300) * 이동데스크 9개소×5~10(60)	+70
기타사업비 (자료발간, 워크숍 등)	412 * 활용가이드 제작, 조사 87 * 워크숍 40 * 국내 마케팅 연계 285	90 * 마케팅연계홍보 50 * 조사 40	△322
합 계	1,500	1,500	전년과 동일

④ FTA활용촉진 기반 조성 : ('16) 400 → ('17) 250백만원

㉠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16) 300 → ('17) 150백만원

- (목적 및 내용) 기업이 시스템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현행화 및 기능 유지·보수

* 원산지관리시스템 : 상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계산하여 원산지확인서·증명서(자율확인)를 발급하고 그 근거자료를 관리하여 기업의 편의성 도모

- (지원범위) 무장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와 기업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사용자 상담·교육 비용

▪ (산출근거) 시스템 유지·보수 : 100백만원, 전문상담·교육 : 50백만원

* 원산지정보시스템 데이터 최신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유지 보수, 발효 FTA 원산지기준(PSR) 추가(필요시) 등

㉡ 1380 통합콜센터 : ('16) 100 → ('17) 100백만원

- (목적)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현장애로를 원스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간편번호(1380)를 가진 FTA 콜센터 구축·운영

- (내용) 관세사를 배치하여 업종별*, 분야별** 전문상담
 - * 자동차 부품, 섬유, 전기전자, 기계, 화학, 기타 등으로 분류
 - ** 품목분류, 원산지관리, 통관절차, 사후검증 등 기업 애로요인별 분류
- (지원범위) 기업 대상 FTA활용 문의 안내 및 전문가 심층 상담 ('15년 상담 건수 평균 120건/일)
 - (산출근거) 상담 20회선 운영비(200백만원)의 50%(나머지 50% 한국무역협회 분담) → FTA 콜센터 운영비 1,100백만원('16년 기준)의 9% 수준

< FTA 전문인력 양성 : ('16) 2,320백만원 → ('17) 1,370백만원 >

① 대학FTA 강좌 지원 : ('16) 500 → ('17) 440백만원

- (목적) 대학내 상경계 학과(경영, 무역 등)에 FTA활용 정규강좌를 개설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FTA활용 기초 실무인력 저변 확대
- (지원범위) 공모를 통해 22개 내외 대학 선정하여 사업비(강사비 등), 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
 - (산출근거) 22개 대학 * 2개 학기 * 10백만원 = 440백만원

② FTA 비즈니스 석사과정 : ('16) 1,300 → ('17) 650백만원

- (목적) 중소기업 FTA 활용을 선도하고 정부의 FTA 정책을 뒷받침할 컨설팅 전문가, 강사 등 FTA 석사급 전문인력 양성
- (지원대상) 총 7개 석사과정 운영대학 (수도권 3, 비수도권 4)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충청권	호남권
서울대, 성균관대, 인하대	부경대	경북대	충남대	조선대

- (지원규모) 대학별 학년당 9천만원 내외 차등 지원
- (사업기간) '13년 이후 5년간 한시 지원
- (지원내용) 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비 일부 및 학생 장학금 등
 - (산출근거) 7개대 × 90백만원 ≒ 650백만원

③ FTA 활용 컨설팅 교육 : ('16) 370 → ('17) 150백만원

- (목적) 정부 유관기관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 지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중소기업 상담시 FTA를 활용한 수출마케팅 전략 활용

* 정부 유관기관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해 퇴직무역 전문가를 활용하여 수출 상담요원 운영 중

- (교육내용) 국제경제 트렌드, FTA원산지 활용, FTA 마케팅 전략, FTA 컨설팅 기법 등을 포괄하는 커리큘럼 구성
- (산출근거) 100명 × 1.5백만원 ≒ 150백만원

④ FTA 이러닝 : ('16) 150 → ('17) 130백만원

- (목적) 시간·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담당자의 FTA 활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실시
- (운영현황) FTA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기본 및 활용편, 업종별, 국가별 총 10개의 FTA 교육 강좌 운영
- (지원범위) 전문기관 교육관리 위탁, 기 구축된 콘텐츠에 대한 FTA 체결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한 유지보수 및 추가 콘텐츠 개발
- (산출근거)

사업 내용	소요예산
.이러닝 교육관리 대행(시스템 구축 임대 포함)	95백만원
.기존 콘텐츠 유지 보수	5백만원
.콘텐츠 개발	30백만원
계	130백만원

< FTA 국내대책 등 추진 지원 : ('16) 2,030백만원 → ('17) 1,980백만원 >

① FTA 홍보 : ('16) 1,100 → ('17) 1,100백만원

- (목적) : FTA 정책 정보 공유 활성화 등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해 FTA의 공식 참여에 대한 당위성 등 국민 이해도 및 정책 수용도 향상
- (내용) : ①정책 전반의 정보 제공 ②비준 지원 홍보 ③기발효 FTA의 활용 정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 (상시홍보) 정기간행물·FTA 홈페이지를 통해 통상 정책 전반에 대한 관련 정보 수시 제공

*정기간행물 '함께하는FTA' 발간 : 5.8억원, 'FTA 강국 코리아' 홈페이지 유지보수 : 1.2억원

- (계기홍보) 한-콜롬비아FTA 발효, 한-중미FTA 실질적 타결 선언에 따른 가서명, 정식 서명, 국회 비준 지원을 위한 홍보 활동

* 간행물, 방송프로그램, 지상파 광고 등 콘텐츠 제작 및 보급 : 3억원

- (활용홍보) 원산지증명, 사후검증 및 컨설팅 등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온라인 홍보 및 정보 확산

* 네이버 다음 등 온라인 검색 광고 및 콘텐츠제작 1억원

< '09~'16 FTA 홍보 예산현황 > (억원)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합 계	81	42	70	18	12	10	61.45	11
예 산	18	42	25	18	12	10	10	11
예비비	63	-	45				51.45	

② FTA 설명회 등 : ('16) 930 → ('17) 880백만원

㉠ FTA 설명회 : ('16) 100 → ('17조정) 100백만원

- 지원대상 : FTA활용 중소기업, 지자체 공무원, 지역기업지원기관 등
- 지원내용 : FTA이해도 제고 및 지역 민관협력체계 구축
- (산출근거) 16개 시·도 설명회 : 8천만(8백X10개), 민관 합동워크숍 : 2천만원

㉠ FTA 이행상황평가 : ('16) 200 → ('17) 150백만원

- 통상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발효 후 5년이 경과한 통상조약에 대해 이행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의무규정)
- (평가내용) 통상조약의 경제적 효과, 피해산업 국내대책의 실효성과 개선방안, 상대국 정부의 조약상 의무 이행상황 등(제15조 1항 1~4호)
- (평가주기) FTA별로 발효 후 5년마다 총 2회 실시

평가횟수	평가대상	발효일	평가시기
1회*	한·칠레	'04.04.01.	평가완료('14. 7월 국회제출) / 80백만원
	한·싱가포르	'06.03.02.	평가완료('15. 6월 국회제출) / 35백만원
	한·EFTA	'06.09.01.	평가완료('15. 5월 국회제출) / 50백만원
	한·ASEAN	'07.06.01.	평가완료('15. 12월 국회제출) / 130백만원
2회 (5년마다)	한·인도	'10.01.01.	평가완료('16. 1월 국회제출) / 130백만원 2020년 하반기 평가
	한·EU	'11.07.01.	2016년 하반기(연구용역 중), 2021년 하반기 평가
	한·페루	'11.08.01.	2016년 하반기, 2021년 하반기 평가
	한·미국	'12.03.15.	2017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 평가
	한·터키	'13.05.01.	2018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 평가
	한·호주	'14.12.12.	2020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평가
	한·캐나다	'15.01.01.	2020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평가
	한·중국	'15.12.20.	2021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평가
	한·뉴질랜드	'15.12.20.	2021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평가
	한·베트남	'15.12.20.	2021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평가

* 통상절차법 제15조에 따라 FTA별로 발효 후 5년마다 총 2회 실시, 동법 시행 ('12.7월) 전에 체결되어 이미 5년이 경과한 FTA는 1회만 평가 실시

- ('17년 소요) 한·미 FTA 이행상황평가 (150백만원)

㉡ FTA 사업추진 운영비 : ('16) 630 → ('17) 630백만원

- FTA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
 - (산출근거)수용비140, 공공요금20, 매식비35, 임차료25, 국내여비71, 국외여비47, 사업추진비36, 관서업무비126, 연구개발비110, 자산취득20

□ 지원 필요성

- 중소기업의 FTA 활용수준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해 FTA 활용지원 사업 추진 필요
- 통상협정 체결에 대한 적실성 있는 국내 보완대책 수립·시행과 대국민 홍보 추진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감 (B-A)	%
□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10,292	13,282	13,550	268	2.0
▪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6,382	8,932 (FTA종합지원센터 지원 4,982, 지역FTA 활용지원센터 지원 210,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지원 150, FTA 활용촉진(반조성) 400)	10,200 (FTA종합지원센터 지원 5,950, 지역FTA 활용지원센터 지원 250,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지원 150, FTA 활용촉진(반조성) 250)	1,268	14.2
▪ FTA 전문인력양성	2,100	2,320 (대학 FTA강좌 지원 500, FTA 비즈니스 석박정 지원 130, FTA 활용컨설팅 교육 370, FTA 이라닝 150)	1,370 (대학 FTA강좌 지원 440, FTA 비즈니스 석박정 지원 60, FTA 활용컨설팅 교육 150, FTA 이라닝 130)	△950	-40.1
▪ FTA 국내대책 등 추진지원	1,810	2,030 (FTA홍보 1,100, FTA 설명회 등 지원 930)	1,980 (FTA홍보 1,100, FTA 설명회 등 지원 880)	△50	-2.4
□ 비 목	10,292	13,282	13,550	268	2.1
▪ 기타직보수(110-01)	-	-	-	-	-
▪ 수용비(210-01)	1,588	1,236	1,240	4	0.3
▪ 공요금및제세(210-02)	20	20	20	-	-
▪ 특근매식비(210-05)	-	35	35	-	-
▪ 임차료(210-07)	20	25	25	-	-
▪ 복리후생비(210-12)	-	-	-	-	-
▪ 차량선박비(210-10)	-	-	-	-	-
▪ 위탁사업비(210-15)	600	1,050	980	△70	6.7
▪ 기타운영비(210-16)	-	-	-	-	-
▪ 국내여비(220-01)	70	75	71	△4	5.3
▪ 국외여비(220-02)	50	47	47	-	-
▪ 사업추진비(240-01)	36	36	36	-	-
▪ 관서업무비(240-02)	126	126	126	-	-
▪ 연구개발비(260-00)	230	310	260	△50	16.1
▪ 민간경상보조(320-01)	7,532	10,302	10,690	388	3.8
▪ 연금지급금(320-03)	-	-	-	-	-
▪ 자산취득비(430--01)	20	20	20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 FTA 활용촉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피해산업의 보완대책 점검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6	132.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 무역센터 등 89.3 ▪ FTA 인력양성 : 23.2 ▪ FTA 국내대책 추진 : 홍보, 운영비 등 : 20.3
'17	144.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 무역센터 등 98.6 ▪ FTA 인력양성 : 24.2 ▪ FTA 국내대책 추진 : 홍보, 운영비 등 : 21.9
'18	14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 무역센터 등 102.6 ▪ FTA 인력양성 : 22.2 ▪ FTA 국내대책 추진 : 홍보, 운영비 등 : 22.4
'19	150.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 무역센터 등 105.6 ▪ FTA 인력양성 : 22.4 ▪ FTA 국내대책 추진 : 홍보, 운영비 등 : 22.5
'20	15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 무역센터 등 109.2 ▪ FTA 인력양성 : 25.4 ▪ FTA 국내대책 추진 : 홍보, 운영비 등 : 21.5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추진경위
 - '06. 8월 한·미 FTA 체결위원회 발족
 - '07. 5월 FTA 국내대책위원회·대책본부 출범
 - '13. 2월 산업통상자원부로 조직이관
 - *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에 대한 국내대책을 총괄적으로 지원

- '14. 3월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개정 시행
 - *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비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15. 2월 한중 FTA 가서명('15.2.25) 및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 발표
 - * 통상추진위원회('14.11.26), FTA 활용촉진협의회('14.12.23), 대외경제장관회의('15.1.20)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수립
- '15. 5월 '한중 FTA 국내산업경쟁력 강화대책 수립'
 - *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15.4.22, 5.20),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15.5.19),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15.5.20), 대외경제장관회의('15.5.29)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70	56	103	133	13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3)정부조직개편 이용 85, 연구용역비 이월 60, 예산절감 불용 504백만원
 - * 산업부로 정부조직개편 되면서 계약직 사무보조원이 기재부에 잔류하면서 기타직보수(인건비)를 기재부 인건비로 이용 (85백만)
- ('14)활용지원 사업 정산 사업비 잔액, 운영비 절감 불용(206백만원)
 - * 낙찰차액(7백만원) 및 회의축소(32백만원)에 따른 사업비 절감, 비정규직 결원 발생에 따른 비용 절감(160백만원) 등
- ('15)FTA비준안 국회통과 지연으로 인한 이월, 계약잔액 등 집행 절감에 따른 불용(115백만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56	3		59	53	1	5
	()	()	()	()	()	()	()
'14년	106.4	0.6		107	105		2
	()	()	()	()	()	()	()
'15년	103		51	154	152	1	1
	()	()	()	()	()	()	()

* 2015년도 홍보 예비비 : 5,154백만원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2013년 국회 지적사항】

<지적내용>

-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관세사가 매년 3월말에 계약체결·파견되어 현장에 3개월의 공백이 발생하고, 12개월분 사업비가 불필요
- 조직개편 후 상설화된 조직임을 감안할 때 현행 사업비에 포함된 기본경비를 사업비와 분리할 필요

<지적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 '13년 정부조직개편으로 관세사 계약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14년부터는 2월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1년(차년 1월까지)으로 하여 현장 공백을 방지
- '14년 예산편성시 기본경비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재정당국과 협의

【2015년 국회 지적사항】

<산업위 결산 지적내용>

- FTA비즈니스 석사과정 사업관리 지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지출계정항목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동 사업규정을 재점검하고 각 대학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 FTA 활용 컨설턴트 양성사업의 수료자 중 FTA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수료자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실적저하 사유를 분석하여 사업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원산지확인서 발급지원사업의 제3자확인기관인 지역FTA센터의 공신력 제고와 함께 관련 근거 법령을 보다 명확히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지적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 계정항목을 보다 구체화하고 예산변경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집행지침 개정('16. 4월)

- 교육생의 역량검증 강화를 위한 면접 강화 및 수료기준을 강화하고, 관련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매칭한 현장실습을 도입하는 등 고용연계형 실습교육으로 개선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에 필요한 "FTA활용지원사업 운영 지침" 제정을 통해 지역 FTA센터 수행업무의 공신력 제고 및 법적 근거를 확보 ('15.12월)

【2016년 국회 지적사항】

<'15년 결산 지적내용>

- FTA 활용 컨설턴트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복수 운영기관 활용에 따른 평가·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고, 전담기관의 책임 하에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지적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 전담기관으로 KOTRA를 지정하여, '17년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16.10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직접추진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